



A publication of the Center for Nonproliferation Studies, Montere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ASIAN EXPORT CONTROL Observer

2005년 2/3월호 No. 6

목 차	
<p>아시아지역 최근 소식.....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이 인도네시아와의 군사 협력 재개 한 가운데 인도네시아, 북한의 무기 판매 제안에 대해 숙고 - 한국 전략물자 수출을 위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 남북한 경계선 근처에 개성공단 준공 <p>불법 거래.....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 과학자, 한국에 민군 겸용 물자 판매 협의 <p>지역 대량살상무기 확산 문제.....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반도체 기업, 국산 기술 개발 성과 발표; 미국 및 대만 수출 관리 효율성에 대한 의문제기 - 러시아-인도 미사일 수출 계획, MTCR의 우려 불러일으켜 <p>지역 협력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태평양 고위 공직자들, 대량살상 무기 비확산 논의 	<p>해운 및 항만 보안.....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확산 저지 수단으로 해양안전조약 강화 지지 - 인도 정부, 해양안전 강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대해 냉담 <p>지역 개요13</p> <p>주요 수출통제 이슈.....1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 보고서: 성장통 - 대만의 수출통제 체계 개요 <p>국제 소식.....2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크라이나, 이란 및 중국에 대한 불법 무기 판매 주장에 대해 조사 - 다이렉티브이(DirecTV)사, 수출관리규정 위반으로 벌금형 <p>워크숍 및 컨퍼런스.....2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와 인도네시아, 생물무기금지협약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에 대한 지역 워크숍 공동 주최
특별 보고서:	
<p>수출관리 및 비확산 진전에 대한 동아시아 정부들의 보고서: 1540 위원회 제출 보고서 검토.....27</p>	

Asian Export Control Observer (<http://cns.miis.edu/pubs/observer/asia>) 은 몬트레이 국제학 대학원 (Montere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MIIS]), 비확산연구소 (Center for Nonproliferation Studies [CNS]) 에서 격월로 발간됨. 산업연구원에서 번역됨.

아시아 지역 최근 소식

미국이 인도네시아와의 군사 협력 재개한 가운데 인도네시아, 북한의 무기 판매 제안에 대해 속고

인도네시아 방위전략 책임자인 수드라자트 (Sudrajat) 장군의 2005년 1월 27일 발표에 따르면, 북한은 양 국가간의 방위협력을 굳건히 하기 위하여 레이더 탐지 시스템과 잠수함을 포함한 다양한 무기를 판매하도록 인도네시아 측에 제의하였다.¹

본 발표는 인도네시아 수도인 자카르타에 위치한 국방부에서 열렸던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인 주윈노 수다소노 (Juwondo Sudarsono) 와 북한 군사산업국 차관 김철민 간의 회의 후 이루어진 것이다. 북한을 “오랜 친구”라고 지칭한 수드라자트 장군은 여러 국가에서 제안을 받아왔으나 북한 패키지에 최우선을 두고 “[무기가] 우리 무기시스템과 호환될 수 있는지”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²

미국이 1991년과 1999년에 인도네시아에 내린 무기 금수조치와 각종 인권침해 문제로 인한 워싱턴의 자카르타와의 군사협력 단절로 인해 인도네시아는 최근까지 러시아 및 잠재적으로는 북한과 같은 국가들로 군사 제품 공급국을 전환하도록 압박을 받아왔다. 하지만 1980년대 자카르타 주재 미국대사로 3년간 일했으며, 현 미국 국방부 차관인 폴 울포위츠 (Paul Wolfowitz) 는 2005년 1월 16일, 미국은 인도네시아에 내려진 무기 금수조치를 완전히 해제하는 사안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도네시아의 쓰나미 태풍 피해지역에 대한 인도네시아 군의 구제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G-130 군사용 비행기의 예비부품을 인도네시아 군대에 제공함으로써 부분적으로 금수조치를 해제하였다고 말했다.³ 또한, 2005년 2월 미국 국무장관 콘돌리자 라이스(Condoleezza Rice)는 미 의회에서, 인도네시아는 동티모르 민간인 대학살로 인해 1992년 이후 중단되었던 국제 군사 교육훈련 프로그램 하에 미국-인도네시아간의 군사협력을 “재개 할 수 있는 법률적 환경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단언하였다.

한국, 전략물자 수출을 위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한국수출기업들에게 생산품이 전략 품목에 해당되는지와 한국수출통제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2005년 2월 17일 한국 산업자원부에서 온라인 데이터베

¹ “Indonesia: North Korea Offers to Sell Submarines, Radar,” *Jakarta Tempo Interaktif*, January 27, 2005, in FBIS SEP20050128000034.

² “Indonesia: North Korea Offers to Sell Submarines, Radar,” *Jakarta Tempo Interaktif*, January 27, 2005, in FBIS SEP20050128000034.

³ “U.S. Indicates Readiness to Resume Military Ties with Indonesia,” Xinhua News Agency, January 17, 2005, in Lexis-Nexis, <<http://www.lexis-nexis.com>>.

이스 시스템을 구축하였다.⁴

한국 전략물자 수출관리 정보시스템 (Korea Strategic Items Export Control Information System) (<http://www.sec.go.kr>) 은 시스템에 등록된 이용자들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고, 이를 통해 수출관리 시스템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고안되었다. 특수 검색엔진을 이용함으로써 이제 한국 기업들은 온라인상으로 수출 허가를 요구하고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행정적 문서작업을 최소화하여 수출허가를 받기 위해 소요되던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⁵

또한, 부품 및 자재에 대한 표준 10자리 상품 설명과 코딩 시스템은 수출 등록 과정을 손쉽게 하고 등록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줄이도록 고안되었다. 이전에는 수출허가 신청 시 수출기업은 500 페이지의 메뉴얼도 함께 제출해야 했다. 이로 인해 한국기업들은 서류 허가증이 없는 통제대상 물품을 무심코 선적하여 정부의 제재를 자초하기도 했다.⁶ 한국 산업자원부는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한 발표와 더불어, 최근 관련 규정을 어긴 기업 중 4달 반 - 2005년 2월 18부터 6월 30일까지 - 의 유예기간 동안 자진신고하고 새로운 시스템의 사용법을 배우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률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발표했다.⁷

남북한 경계선 근처에 개성공단 준공

2004년 12월 15일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첫 상품이 한국으로 출하되었다. 비무장지대에서 북쪽으로 약 10킬로미터 지점에 있는 북한 개성지역에 위치한 개성공단은 북한의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한국의 현대 아산 및 한국토지공사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이다.⁸

해당 프로젝트는 2000년 6월 평양에서 열렸던 한국의 김대중 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 간 정상회담의 결과물이다. 양측은 남북한 간의 평화 및 화해노력의 일환으로 경제프로젝트를 실시하는데 동의하였으며, 본 3단계 프로젝트의 시범 단계에 노동집약적 제조업에 종사하는 15개 남한 기업이 참여하였다. 개성공단 프로젝트의 첫 단계 프로젝트는 2006년에 완성될 예정이며,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가 완성되는 2012년에는 대략 2천개의 기업이 개성공단에 사업체를 설립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⁴ "S. Korea Launches Strategic Item Export Screening Database," Asia Pulse, February 17, 2005 in Lexis-Nexis, <<http://www.lexis-nexis.com>>.

⁵ "S. Korea Launches Strategic Item Export Screening Database," Asia Pulse, February 17, 2005 in Lexis-Nexis, <<http://www.lexis-nexis.com>>.

⁶ Lee Kyong U, "Chollyakmulcha 'such'ulip sis ut'em'kaet'ong" (Strategic Goods Export System Launched), ETNews, February 18, 2005, <<http://www.etnews.co.kr>>.

⁷ Kang Hui Chong, "Chollyakmulcha onlain ch'ek'u such'ulipkwalli sis ut'em kaet'ong" (Strategic Goods Export Control Online System Launched), Digital Times, February 18, 2005, <<http://www.dt.co.kr>>.

⁸ "DPRK, ROK Anticipate Benefits, Obstacles to Kaesong Industrial ZoneMultimedia," FBIS Report, February 24, 2004, in FBIS KPP20040224000111; South Korea Ministry of Unification, "Kaesonggongdan saopch'ujin hyonhwang" (The Current Status of Efforts to Promote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December 31, 2004.

많은 미국 관료들이 개성공단이 북한으로 전략물자를 운송하는 운송 포인트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해왔으며, 2004년 미국과 한국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회담을 가졌다.⁹ 한국의 수출통제 규정 및 국제수출통제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개성공단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투자 신청을 검토하고, 모든 장비운송에 대한 최종허가는 통일부에서 담당한다.¹⁰ 한국 정부부처 간의 허가 처리에 이어, 통일부 및 한국 국방부는 비무장지대를 지나 북한으로 인력 및 물자를 운송하는 일을 통제하고 있는 유엔군사정전위원회와도 협의과정을 거쳤다.¹¹

불법 거래

러시아 과학자, 한국에 민군 겸용 물자 판매 혐의

2005년 3월 2일 러시아 바슈키리아 (Bashkortostan) 우파 (Ufa) 에 위치하고 있는 러시아 과학아카데미의 금속초가소성문제연구소 (Russian Academy of Sciences Institute of Metals Super-plasticity Problems [IPSM]) 소장이자 물리학자인 오스카르 카이비셰프 (Oskar Kaybyshev) 가 한국 타이어사의 부품제조 계열사인 ASA (Artisan Spirited Alloy) 사에 티타늄 합금을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다.¹² 2003년에 판매가 이루어졌으며, 해당 금속은 러시아 연방 보안국 (Russian Federal Security Service [FSB])에서 국가기밀이라고 주장하는 초가소성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생산되었다.

카이비셰프는 특히 러시아 법률조항 203 (국가기밀), 189 (민군 겸용 기술의 불법수출), 285 (직권남용), 160 (자금횡령) 및 327 (문서위조) 를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¹³ 국가기밀 누설에 대한 혐의는 이후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되지 않았다.¹⁴ [편집자 주: 카이비셰프의 부관 이리나 제이그만 (Irina Zeygman) 도 사기혐의를 받았으나 역시 불기소되었다.¹⁵] 러시아 연방 보안국은 2003년 3월 29일 카이비셰프에 대한 사건을 개시하였다. 카이비셰프는 2005년 2월 18일 해고 되고, 자택 연금된 상태였다.

카이비셰프 박사는 해당 금속이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설명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해

⁹ Lee Young-jong, "Gaeseong Prompts Tech Transfer Worry," *Joongang Ilbo*, August 5, 2004, <<http://joongangdaily.joins.com>>; "ROK Daily: U.S. Concerned Kaesong Project May Feed N.K. Military," *Chosun Ilbo*, December 17, 2004, in FBIS KPP20041216000120.

¹⁰ "S Korean Cos Check Strategic Goods Status in Transfer to N.Korea," *Asia Pulse*. February 4, 2004, in Lexis-Nexis, <<http://www.lexis-nexis.com>>.

¹¹ Interview with United Nations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official, December 2004.

¹² Bryon MacWilliams, "Russian Security Arrests Institute Head for Spying," *Nature*, Vol. 433, No. 789, February 24, 2005, <<http://www.nature.com>>.

¹³ Gulchachak Khannanova, "Akademika otchislili iz shpionov" (Academic Removed from List of Spies), *Kommersant*, March 3, 2005; in Integrum Techno, <<http://www.integrum.com>>.

¹⁴ "Ufmskomu fiziku predyavleny obvineniya po chetyrem statyam" (Ufa Physicist Charged with Violating Four Articles), *Gazeta.ru*, March 2, 2005; in Integrum Techno, <<http://www.integrum.com>>.

¹⁵ Gulchachak Khannanova, "Akademika otchislili iz shpionov" (Academic Removed from List of Spies), *Kommersant*, March 3, 2005, in Integrum Techno, <<http://www.integrum.com>>.

왔다.¹⁶ 또한 그는 초가소성 금속 생산은 오랫동안 기밀로 고려되지 않았으며, 과거에도 여러 차례 외국에 판매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¹⁷ 초가소성이란 금속 내의 분자를 정렬하여 압력에 대한 저항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카이비셰프 박사가 미국에서 특허를 받았으며, 여러 과학 연구보고서의 주제가 되어 왔다.¹⁸ 문제가 된 기술 역시 카이비셰프와 파리드 우티아셰프 (Farid Utyashev) 가 저술하고, 버지니아에 위치한 교육 및 컨설팅 회사이며 국제과학기술 센터 (Inter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enter) 에서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퓨처패스트 (Futurepast) 에서 출간 예정이었던 도서에도 기술되어 있다.¹⁹ 카이비셰프는 러시아 과학아카데미의 금속초가소성문제연구소 [이하 연구소]는 지난 15~20년간 어떠한 비밀 작업에도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²⁰

러시아 과학아카데미의 금속초가소성문제 연구소는 자동차 타이어 제조에 연구소의 기술을 이용하고자 하는 외국 기업들과 협력해왔으며, 1987년에는 인도에, 그리고 1990년도에는 이탈리아에 금속을 수출했다. 카이비셰프는 연구소가 1987년부터 관련 연구 프로젝트를 인도와 공동으로 수행해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구소는 연구결과가 군사용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Russian Academy of Sciences [RAS]) 측에 해당 금속에 대해 독립적인 전문가의 검토를 시행해 줄 것을 두 차례 요구하였다; 두 번의 검토 모두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전문가들은 해당 기술이 금지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²¹

러시아 뉴스 웹 사이트 가제타 닷 루 (Gazeta.ru) 에 따르면 카이비셰프 사건을 접한 러시아 경제발전무역국 (Russian Ministry of Development and Trade) 은 한국과의 거래는 ‘군사용 기술’ 카테고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하지만 카이비셰프는, 러시아 연방 보안국이 그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또 다른 기관에 전문가 평가를 의뢰했었다고 말했다.²² 카이비셰프는 또한 러시아 연방 보안국이 그의 경쟁자 측의 요청으로 그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비

¹⁶ Gulchachak Khannanova, “Akademika otchislili iz shpionov” (Academic Removed from List of Spies), *Kommersant*, March 3, 2005, in Integrum Techno, <<http://www.integrum.com>>; Fazil Kashayev, “Sharoballony massovogo porazheniya” (Metal Spheres of Mass Destruction), *Gazeta.ru*, March 2, 2005, in Integrum Techno, <<http://www.integrum.com>>.

¹⁷ Gulchachak Khannanova, “Akademika otchislili iz shpionov” (Academic Removed from List of Spies), *Kommersant*, March 3, 2005, in Integrum Techno, <<http://www.integrum.com>>; Gulchachak Khannanova, Natalya Pavlova, “Na akademika katyat shar-ballon” (They are Throwing a Metal Sphere at an Academic), *Kommersant*, February 21, 2005, in Integrum Techno, <<http://www.integrum.com>>.

¹⁸ “AAAS: ‘Release Russian Scientist Dr Kaibyshev’,” Network for Education and Academic Rights website, <<http://www.nearinternational.org>>.

¹⁹ “Ufimskomu fiziku predyavleny obvineniya po chetyrem statyam” (Ufa Physicist Charged with Violating Four Articles), *Gazeta.ru*, March 2, 2005, in Integrum Techno, <<http://www.integrum.com>>; “World Renowned Russian Scientist Under Investigation by FSB For Allegedly Divulging ‘State Secrets’,” Press Release, FuturePast Incorporated website, February 16, 2005, <<http://www.futurepast.com/kaib20050216.pdf>>.

²⁰ Fazil Kashayev, “Sharoballony massovogo porazheniya” (Metal Spheres of Mass Destruction), *Gazeta.ru*, March 2, 2005, in Integrum Techno, <<http://www.integrum.com>>.

²¹ Fazil Kashayev, “Sharoballony massovogo porazheniya” (Metal Spheres of Mass Destruction), *Gazeta.ru*, March 2, 2005, in Integrum Techno, <<http://www.integrum.com>>.

²² Fazil Kashayev, “Sharoballony massovogo porazheniya” (Metal Spheres of Mass Destruction), *Gazeta.ru*, March 2, 2005, in Integrum Techno, <<http://www.integrum.com>>.

난했다.²³

연구소에 대한 러시아 연방 보안국의 조사 활동으로 인해 연구소의 연구 활동은 중단된 상태이다. 초가소성 분야의 전문가들인 박사급 연구원 두 명과 5명의 석사 학위자들은 모두 러시아 연방 보안국의 조사가 시작된 이후 러시아를 떠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과학진흥회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AAAS])는 카이비세프 사건과 관련하여 활동 경보를 내리고, 과학자의 연구 활동이 불법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상술한 논설을 발간했다.

지역 대량살상무기 확산 문제

중국 반도체 기업, 국산기술 개발성과 발표; 미국 및 대만 수출통제 효율성에 대한 의문제기

2004년 12월 캘리포니아 산호세에서 열린 “대만+중국 반도체 산업 전망 (Taiwan + China Semiconductor Industry Outlook)” 에서 발표된, 중국에 기반을 둔 한 반도체 제조기업의 기술 발전에 대한 내용은 반도체 기술 수출통제 효율성에 대한 미국과 대만의 우려를 고조시켰다. 이러한 우려는 2004년 9월 상하이에 기반을 둔 세미콘덕터 매뉴팩처링 인터내셔널 (Semiconductor Manufactur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SMIC]) 사의 기술 심포지움에서 SMIC의 회장인 리차드 창이 90나노미터 (0.09미크론) 식각 [에칭] 기술 개발을 발표했을 때 처음 제기되었다. 대만 혹은 미국에서 불법적으로 반도체 기술 전수가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산업계의 소문에 대해, 창 회장은 2004년 12월 컨퍼런스에서 SMIC의 90나노미터 SRAM [역주: 램의 한 종류로 플립플롭 방식의 메모리 셀을 가진 임의 접근 기억장치] 기술 도약은 ‘내부’에서 완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²⁴

SMIC사의 신규기술 발표는 텍사트 인스트루먼트 (Texas Instruments [TI]) 사와의 합의 하에 핸드폰 칩 생산용 논리회로 제조를 위해, SMIC사의 중국 내 제조시설에서 90나노미터 기술을 2005년까지 사용하기로 한 SMIC사의 2004년 10월 계획을 공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SMIC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사 간의 협약은 부적절한 기술 이전으로 고려되어 산업관계자들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산 호세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창 회장은 해당 기술이 기술 이전의 결과물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개발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창 회장은 해당 기술이

²³ Gulchachak Khannanova, Natalya Pavlova, “Na akademika katyat shar-ballon” (They are Throwing a Metal Sphere at an Academic), *Kommersant*, February 21, 2005, in *Integrum Techno*, <<http://www.integrum.com>>.

²⁴ During the manufacturing process, producers use fine etching technology to place chips upon silicon or another semiconductor material. These so-called wafers are then cut to meet the customer’s preference for size and processing power. However, the chips on the edge of these wafers cannot be used in final products and are scrapped. Consequently, expanding the wafer size and creating finer etching technology increases the cost-effectiveness--more chips can be added to a wafer and performance per a square inch of the wafer; Dan Nystedt, “China SMIC Sees Strong China Chip Market Through 2008,” *The Wall Street Journal Online*, December 8, 2004, <<http://online.wsj.com>>.

중국 군대에서 사용되거나 취득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대만 출신인 창 회장에 따르면, “중국은 우리에게 군사 프로젝트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으며 SMIC는 중국 군대가 하는 일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한다.²⁵

지난 몇 년간 급속한 성장을 보인 SMIC사의 반도체 산업은 논쟁에 휩싸이면서 성장에 먹구름이 드리워졌으며, SMIC사는 다수의 불법 기술 이전, 특허 침해 - 특히 대만에서 시발된 것으로 알려진 기술 관련한 특허권 침해 - 관련 논쟁의 핵심이 되어왔다. 2000년 11월 및 2001년 1월 사이 SMIC사와 경쟁하기 위해 대만 반도체 기업인 타이완 세미콘덕터 매뉴팩처링 컴퍼니 (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mpany [TSMC]) 직원이 불법적으로 기술을 이전한 개별 사건들이 보고되었다.²⁶ TSMC사 또한 SMIC사를 특허권 침해로 고소한 적이 있으나 이 분쟁은 최근 법정 밖에서 해결되었다.²⁷

대만 반도체산업 대표들은 이러한 사건들이 중국 본토로의 기술 이전 통제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하며, 중국의 저비용 생산기반과 성장세에 있는 시장 환경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만 측에서 중국에 대한 투자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몇몇 대만 정치가들은 여전히 중국으로의 기술이전과 이러한 기술이전을 중국에서 군사용으로 활용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에 대한 대응으로 대만 경제부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MOEA]) 는 2002년 중국 반도체산업 투자와 관련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 정책에 따르면 대만 기업들이 먼저 대만에 최신 12인치 반도체 기판 [基板] 생산시설 구축에 투자한 경우에만 예전 기술이면서 비교적 단순한 8인치 반도체 기판 제조시설을 중국에 이전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²⁸ [대만의 수출통제 시스템에 대한 기사는 21 페이지]

미국 역시 중국에 대한 반도체수출 허가 문제에 조심스러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최근 미국은 미사일 및 기타 무기 시스템용 칩 생산이 군사용으로 사용될 것을 우려하여 90나노미터 칩 생산에 필수적인 정밀 기구 수출을 금지하였다.²⁹ 미연방 회계감사원 (General Accounting Office) 에 따르면 미국은 서브 250나노미터 칩 생산 기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중국보다 3세대 앞서나가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³⁰ 하지만 SMIC사의 최근 발표는 중국 기업들이 180, 150 및 130나노미터 사이즈 칩 생산기술을 뛰어넘어 미국의 기술과 거의

²⁵ Peter Clarke, Mark LaPedus, Brian Fuller, “TSMC Takes Pass on Taiwan-China Event,” *EE Times*, December 9, 2004, <<http://www.eetimes.com/article/showArticle.jhtml?articleId=55300637>>.

²⁶ Michael Chase, Kevin L. Pollpeter, James C. Mulvenon, “Shanghaied? The Economic and Political Implications of the Flow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vestment across the Taiwan Strait,” RAND National Defense Research Institute, July 2004, <http://www.rand.org/pubs/technical_reports/2005/RAND_TR133.sum.pdf>.

²⁷ SMIC agreed to settle with TSMC over the incident. Under the settlement’s terms, SMIC will pay TSMC US\$175 million in exchange for TSMC dropping its legal action. “SMIC Reaches Settlement with TSM,” Semiconductor Manufacturing International Corporation Press Release, Shanghai, January 30, 2005, <<http://www.smics.com>>.

²⁸ “TSMC Signs Accord for First China Plant of Local Chipmaker,” *The Taipei Times*, August 30, 2002, p. 1.

²⁹ U.S. General Accounting Office, “Export Controls: Rapid Advances in China’s Semiconductor Industry Underscore Need for Fundamental U.S. Policy Review,” April 2002, <<http://www.gao.gov/new.items/d02620.pdf>>.

³⁰ U.S. General Accounting Office, “Export Controls: Rapid Advances in China’s Semiconductor Industry Underscore Need for Fundamental U.S. Policy Review,” April 2002, <<http://www.gao.gov/new.items/d02620.pdf>>.

동등한 수준까지 발전했다는 것을 보여준다.³¹ 중국이 3세대의 기술을 뛰어넘었다는 사실의 중요성은 이제 중국이 일반적으로 유럽, 북미, 일본 및 대만에서만 생산되던 칩을 중국 내에서도 생산할 능력을 갖추었다는 데 있다.³²

미국 기업들은 SMIC사의 발표는 미국의 반도체 기술통제가 효력이 없음을 증명한다고 지적한다. SMIC사의 10월 발표에 대해 전해들은 인텔사 CEO인 크레그 베렛 (Craig Barrett) 은 2004년 11월 3일, 미국 정부의 수출통제가 “미국 기업들이 다른 경쟁사들과 중국 시장에서 경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베렛은 “한 손을 등 뒤에 묶인 채로 싸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³³

[편집자 주: 미국 반도체 산업은 중국으로의 이전을 통제하는 미국 수출통제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가져왔다. 산업 관계자는 수익 마진이 아주 적은 산업의 경우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중국과 같은 저 단가 생산기반을 가진 국가에서의 연구, 개발 및 제조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과거에 언급한 적이 있다.³⁴ 그들은 투자 및 기술 이전에 대한 미국정부의 통제는 중국에 투자할 수 있는 외국 라이벌 기업들과 미국 기업간의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러시아—인도 미사일 수출 계획, MTCR의 우려 불러일으켜

인도의 최고 미사일 개발 기관인 이마라트 연구센터 (Imarat Research Center) 장인 V.K 사라스왓 (Saraswat) 박사는 2005년 1월 치카라 엔지니어링기술원 (Chitkara Institute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에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인도의 국산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치하하고, 앞으로는 인도도 미사일 수출국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사라스왓 박사는 “미사일 수출이 가능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미사일은 국지전투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³⁵

지난 몇 년간 미디어 보고서들은 탄도 미사일 시스템의 수출을 포함한 다양한 미사일기술 수출제안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역사적으로 인도의 과학 및 정치 분야 지도자들은 탄도 미사일

³¹ Peter Clarke, Mark LaPedus, Brian Fuller, “TSMC Takes Pass on Taiwan-China Event,” *EE Times*, December 9, 2004, <<http://www.eetimes.com/article/showArticle.jhtml?articleId=55300637>>.

³² One hundred and thirty nanometer etching allows a greater number of chips to be placed onto a wafer, expanding the wafers overall capability relative to its size. Shrinking the size of chips is primarily to reduce costs. For military use, chips generally do not need to be smaller than 300 nanometers. U.S. General Accounting Office, “Export Controls: Rapid Advances in China’s Semiconductor Industry Underscore Need for Fundamental U.S. Policy Review,” April 2002, <<http://www.gao.gov/new.items/d02620.pdf>>.

³³ Mark LaPedus, “Intel’s Barrett Cries Foul over Export Controls in China,” *Silicon Strategies*, November 4, 2004, <<http://www.siliconstrategies.com/showArticle.jhtml?articleID=51202676>>.

³⁴ David Rose, Director of Export/Import/Infosec Affairs for Intel, “U.S. Taiwan Business Council Conference: Dual-Use Export Controls and China,” U.S. Taiwan Business Council Conference, San Jose, September 2003.

³⁵ Prerna Uppal, “India Could Be Exporting Missiles,” January 12, 2005, *Express India* (online edition), <<http://www.expressindia.com/fullstory.php?newsid=40692>>; “India May Export Missiles, Official Says,” Global Security Newswire, January 18, 2005, Nuclear Threat Initiative website, <<http://www.nti.org>>.

수출 의향이 없음을 분명히 해왔다. 하지만 현재 러시아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착탄거리 280킬로미터의 브라모스 (BrahMos) 초음속 크루즈 미사일은 수출이 이루어질 것임을 명백히 해왔다. 이 부분에서 인도의 패트리엇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수출허가 가능성을 포함하여, 최근 인도와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에 들어간 미국과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³⁶ 미국 및 러시아와는 달리 인도는 MTCR 회원국은 아니지만 브라모스 미사일 수출은 워싱턴의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브라모스 미사일은 미사일기술통제체제의 가장 강력한 제재 조항인 카테고리 I [500 킬로그램의 유도 탄두를 300킬로미터 이상 거리까지 발사할 수 있도록 미사일을 조작하는 것] 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카테고리 II [유도 탄두를 가진 착탄 거리 300킬로 미사일] 에는 분명히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러시아에 대해 수출 건별 검토를 시행하고 혹시 시스템이 대량살상무기 운송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해 정부 대 정부 용도 및 미사일을 받는 정부로부터 사용자 보증을 받을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인도 정부 관계자는 장갑차와 지대공 미사일, 그리고 프리트비 (Prithvi) 탄도 미사일 시스템의 하부 시스템을 수출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 장갑차와 대부분의 지대공 미사일들은 MTCR에 해당되지 않지만, 프리트비 미사일의 하부 시스템 혹은 완제된 미사일 시스템을 수출하는 행위는 인도가 MTCR 회원국들에게 시스템 수입국이 카테고리 1에서 제한하고 있는 300킬로미터/500킬로그램에 달하는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 거리 및 탄두 교체 수법을 통해 미사일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1,000킬로그램의 탄두를 150킬로미터까지 발사할 수 있는 프리트비-1 미사일 시스템은 카테고리 1에 해당한다. 인도의 미사일 수출에 대한 상세 정보는 핵위협 이니셔티브 (Nuclear Threat Initiative) 웹사이트 (http://nti.org/e_research/profiles/India/Missile/1756_1830.html) 에 있는 인도 국가 개요 미사일 수출 테이블 참조.

지역 협력

아시아태평양 고위 공직자들,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논의

2005년 2월 9일 일본 외무성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은 도쿄에서 제2회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관련 아시아 고위관리자회담 (Asian Senior-Level Talks on Nonproliferation [ASTOP])을 주최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소속의 9개국 뿐 아니라 호주, 중국, 한국 및 미국에서 온 고위 공직자들이 본 회담에 참가하였다.³⁷ 회담 전 연설에서 존 볼튼 (John Bolton) 미국 국무부 차관은 ASTOP을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과 같은 노력에 대해 논의하고, 합법적 수출통제를 빠져나가는 암시장 네트워크 차단 방법, 그리고 지역의 기타 과제들을 토론하기 위한 국가 포럼이다. 제1회 ASTOP 회담 이후 [2003년 11월] PSI에 동참하는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급속히 증가했다. 요약하자면, 대량살상

³⁶ Shyam Bhatia, "India to Discuss F16, Terrorism with Rice," *Bangalore Deccan Herald*, March 16, 2005, in FBIS SAP20050316000048.

³⁷ The participating countries from ASEAN were Brunei Darussalam, Cambodia, Indonesia, Laos, Malaysia, the Philippines, Singapore, Thailand, and Vietnam. Myanmar was unable to attend due to "domestic circumstances." "Dai Nikai Ajia Fukakusan Kyougi" (Second Asian Senior-Level Talks on Nonproliferation), Japanes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February 10, 2005, <<http://www.mofa.go.jp>>.

무기 거래 관련 범망을 빠져나갈 방법을 모색하는 국가 및 사업체에 대해 회담 결과에 따른 의무사항을 부여하는데 대한 공감대가 커져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묘사했다.³⁸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구상은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관련 선적을 금지하기 위해 조직된 협력체제이다.

회담 중 참석자들은 지역 책임문제와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에 대해 평가했다. 특히, ASEAN의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활동, 즉 동남 아시아국가연합 지역 포럼 (ASEAN Regional Forum [ARF]),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ASEM) 및 2003년 11월에 열렸던 제1회 ASTOP 회담 이후의 진전 사항에 초점을 두었다. 회담 참가자들은 또한 북한 핵문제, 평양 미사일 확산 문제, 및 파키스탄 과학자 A. Q. 칸 (Khan) 에 의한 핵물질 및 기술의 불법 거래를 포함한 최근 동아시아에서 일어난 대량살상무기 확산 사태에 대해 논의했다. 각국 대표들은 북핵 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북한과 6자회담을 지속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불법 거래망이 다시 조직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³⁹ [북한 이외의 6자회담 참가국은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 및 미국이다.]

회담 협의사항에 의하면 참가자들은 각각의 국가들에 대한 핵사찰, 탄도미사일확산관련 국제미사일행동규약 (Hague Code of Conduct)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의 강화를 위한 국제원자력기구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의 부가 의정서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의 참여를 강화하는 문제를 포함하여, 해당 지역에서의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노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⁴⁰

대표자들은 또한 “아시아 국가들이 군비제한 및 비확산 관련 협정 및 규범을 실행하는데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 및 장애요소” 그리고 “장애요소를 극복하기 위한 협력 가능성”에 논의의 초점을 두었다.⁴¹ 장비 및 시설 확충과 같은 “경식[硬式]” 접근방식과, 능력배양과 같은 “연식[軟式]” 접근 방법 모두를 통한 국제 비확산 의무의 실행을 강화하고 내부적인 인식 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조치 수단에 대해 논의하였다. 참가국들은 지역의 개발도상국들이 핵물질 및 기술의 흐름을 저지할 수 있도록 내부 수출통제력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⁴²

³⁸ John Bolton, “Stopping the Spread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n the Asian-Pacific Region: The Role of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Speech at the Tokyo American Center, Tokyo, Japan, October 27, 2004, <<http://usinfo.state.gov/eap/Archive/2004/Oct/29-875974.html>>.

³⁹ “Dai Nikai Ajia Fukakusan Kyougi,” (Second Asian Senior-Level Talks on Nonproliferation), Japanes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February 10, 2005, <<http://www.mofa.go.jp>>.

⁴⁰ “The Second Asian Senior-Level Talks on Non-Proliferation (ASTOP),” Foreign Ministry of Japan website, February 3, 2005, <<http://www.mofa.go.jp/policy/un/disarmament/arms/astop/talk0502.html>>.

⁴¹ “The Second Asian Senior-Level Talks on Non-Proliferation (ASTOP),” Foreign Ministry of Japan website, February 3, 2005, <<http://www.mofa.go.jp/policy/un/disarmament/arms/astop/talk0502.html>>.

⁴² “Fourteen Asian-Pacific Countries, Including Japan and ASEAN Members, on Wednesday Agreed on the Need to Help Developing Nations Prevent the Spread of Equipment and Materials Related to Nuclear Weapons,” Jiji Press Ticker Service, February 9, 2005, in Lexis-Nexis, <<http://www.lexis-nexis.com>>.

해양 및 항만 보안

일본, 확산 저지 수단으로 해양안전조약 강화 지지

2005년 1월 26일 일본정부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항해안전에 관한 불법행위억제협약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Maritime Navigation [SUA Convention])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 결의를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국제해사기구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에서 현재 논의 중인 본 결의는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의 합법적 규제활동을 강화시키기 위해 협약을 개정할 것이다.⁴³

SUA 협약은 1992년부터 효력을 발휘했으며, 조인국 수는 현재 116개국이다. 협약의 본래 목적은 항해 선박들을 불법행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불법행위에는 “무력을 통한 선박 강탈, 선원에 대한 폭력 행위, 선박을 파괴하거나 훼손할 수 있는 장치의 장착”⁴⁴ 등이 포함된다.

국제 테러리즘 및 불법 대량살상무기 운송에 의해 해상 항해시의 위험이 높아지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60개국 이상의 국가들이 최근 SUA 협약의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개정 내용은 기본적으로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저지하고,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품에 대한 비국가 행위자들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국제 사회의 능력을 강화하는데 있다.⁴⁵

협약 개정내용은 2005년 10월 개최 예정인 SUA 협약 개정 회의에서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해사기구의 법률 위원회에서 최근 개정안을 마무리 짓고 있으며, 이 개정 내용에 대한 합의는 2005년 4월에 열릴 위원회 회의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의 결정은 10월에 열리는 개정 회의에 제출될 것이다.⁴⁶

개정 내용의 최종판에서는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관련 화물 밀수를 범법행위로 규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 국제법에 의하면 해상 선박에 대해 항해금지 (interdiction) 를 내릴 수 있는 범죄는 5가지 즉, 해적 행위, 노예 운송, 무허가 방송, 국기 없는 항해, 및 국기의 부적절한 사용⁴⁷ 등으로만 규정되어 있다.

⁴³ “Japan Eyes Changes to Convention to Allow WMD Searches at Sea,” Asia Pulse, January 27, 2005, in Lexis-Nexis, <<http://www.lexis-nexis.com>>.

⁴⁴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Maritime Navigation, 1988,”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Website, <<http://www.imo.org/Conventions>>.

⁴⁵ “Japan Eyes Changes to Convention to Allow WMD Searches at Sea,” Asia Pulse, January 27, 2005, in Lexis-Nexis, <<http://www.lexis-nexis.com>>.

⁴⁶ “Japan Eyes Changes to Convention to Allow WMD Searches at Sea,” Asia Pulse, January 27, 2005, in Lexis-Nexis, <<http://www.lexis-nexis.com>>;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Maritime Navigation, 1988,”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Website, <<http://www.imo.org/Conventions>>.

⁴⁷ “Japan Eyes Changes to Convention to Allow WMD Searches at Sea,” Asia Pulse, January 27, 2005, in

SUA협약과 관련하여 국제해사기구에서 주최한 기존 컨퍼런스에서 국제 테러리즘 및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질 확산 등에 대항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협약을 개정해야 한다는데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여러 대표자들이 개정 내용이 항해의 자유 원칙 및 UN 해양법협약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에 의해 보장되는 무해통항 (無害通航: Innocent Passage) 권리에 상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⁴⁸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참여국들은 현 국제 법률체제를 무시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활동의 합법화 확대를 위해 현 국제 협약을 확장하고 강화하는 일에는 찬성을 표시하고 있다. 2004년 3월 리스본에서 열린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SUA협약 수정사항에 대해 논의했었다.

인도 정부 해양 안전 강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대해 냉담

2005년 1월 인도 내각 안보위원회 (Indian Cabinet Committee on Security [CCS])는 74억 루피 (미화 1억7천 달러) 규모의 해상안보 강화 및 밀수·불법침해·범죄·테러리스트에 대한 연안지대 보호 계획을 승인했다.⁴⁹ 이 계획에 의해 인도 연안경비대는 인도의 배타적 경제수역 (EEZ) 근방을 포함한 주요 수로 보호를 위해 “초소”들을 지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초소들은 인도 전역에 걸쳐 8곳 - 자카우 (Jakhau), 피파바브 (Pipavav), 라타기리 (Ratagiri), 베프르 (Bepur), 카킨다 (Kakinda), 나가파티남 (Nagapattinam), 폰디체리 (Pondicherry) 및 안다만 (Andaman) 제도 내의 허트 만 (Hut Bay) - 에 지어질 계획이다.

신규 계획은 인도 주변의 수로 순찰을 위해 조직력이 뛰어난 조직의 구성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경찰은 연안 및 연안으로부터 5키로 지점에 해당하는 지역을 보호하게 되며, 해안경비대는 인도 연안 350킬로미터 반경 내 지역을 순찰하게 되고, 인도 해군은 더 먼 지역을 순찰하게 된다.⁵⁰ 인도 해안경비대는 인도 국방부에서 지원받은 자금으로 해안 순찰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이용하게 될 신규 헬리콥터, 호버크라프트(역주: 고압 공기를 밀으로 분사하여 기체[機體]를 떠올려 달리게 하는 탈것), 순찰용 선박 5대, 요격기와 같은 장비를 구매하거나 업그레이드할 것이다.⁵¹

인도는 최근 해양안전 위협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인근 국가의 해군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왔다. 2004년 12월, 인도는 해양 안전에 대한 세미나를 주최하여, 인도 및 스리랑카에서 이루어지는 불법무기 선적단속 목적으로 해상 테러리즘에 대항할 공동 법규에

Lexis-Nexis, <<http://www.lexis-nexis.com>>.

⁴⁸ “SUA Convention,” CNS Inventory of International Nonproliferation Organizations & Regimes, <<http://cns.miis.edu/pubs/inven/pdfs/maritime.pdf>>.

⁴⁹ “CCS Clears Rs. 742-CR Scheme to Boost Maritime Security,” *Indian Express*, January 29, 2005.

⁵⁰ “Coast Guards [sic] Starts Constructing a Series of Stations,” *The Press Trust of India*, January 31, 2005, in Lexis-Nexis, <<http://www.lexis-nexis.com>>; “Indian Coast Guard Welcomes Setting Up of New Coastal Police,” *Hindustan Times*, January 31, 2005.

⁵¹ “Guarding Against Shipments of WMDs,” *Indian Express*, January 31, 2005.

대해 스리랑카와 함께 논의하였다.⁵²

최근 해양 안전에 대한 인도 측의 우려가 커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 국방부 장관 프라납 무카르지 (Pranab Mukherjee)는 2005년 1월, 인도는 미국이 이끄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구상(PSI)에 참여할 준비는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⁵³ 인도는 이란과 북한은 반복적으로 PSI 활동 대상으로 지적되는데 반해 파키스탄 과학자 A. Q 칸 (Khan) 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활동은 묵살되었다고 말하며, 미국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활용에 이중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인도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이 “핵심” 경계 대상 그룹을 다 포함하는 경우에만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서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는 또한 선박 기습 및 물품 검색과 같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의 활동이 국제 해양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명백히 해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⁵⁴

지역 개요

전자부품의 무허가 이전에 대하여 임시 거래금지 명령 (Temporary Denial Order) 내려져: 2005년 2월 7일, 미국 상무부 (US Department of Commerce) 산하의 산업안전국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 은 웬 사 (Wen Enterprises) 및 회장인 닝웬 (Ning Wen), 그의 부인 하일린 린 (Hailin Lin) 및 중국 기업인 베이징 리치 린사이언스 일렉트로닉 사 (Beijing Rich Linscience Electronics Company [BRLE]) 에 대해 임시 거래금지 명령 (Temporary Denial Order [TDO]) 이 내려졌다고 발표했다. 웬 사는 미국과 캐나다 국경 근방인 위스콘신에 기반을 두고 있다. 웬과 린은 웬 사를 통해 2002년 6월부터 2004년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적정한 허가를 없이 미국 수출관리규정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AER]) 에서 통제하고 있는 전자 부품을 BRLE에 판매할 것을 모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BRLE사는 중국 내 불특정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유통기업이었다. 임시 거래금지 명령에 의해 해당인 및 해당기업은 6개월간 미국 수출관리규정에서 통제하는 물품, 소프트웨어 혹은 기술 수출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⁵⁵

대만 사업자 불법무역으로 체포: 2005년 2월 24일, 타오유안 (桃園) 지방 출신 대만사업가 시에친이 (謝進億)가 1999년 리비아에 스커드 미사일용 프로펠러 부품을 판매한 혐의로 체포

⁵² “Meet Focuses on Maritime Security,” *The Hindu*, 19 December 19, 2004; C. Jaishankar, “Smuggling of Explosives to Sri Lanka Still On,” *The Hindu*, October 12, 2004.

⁵³ “US-Backed Proposal on WMDs Needs to be ‘Examined’: Pranab,” *The Press Trust of India*, January 29, 2005.

⁵⁴ Saurabh Shukla, “India to US: Address Our Concerns on Anti-WMD Plan,” *Hindustan Times*, October 19, 2004.

⁵⁵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Action Affecting Export Privileges; Wen Enterprises, Ning Wen, Hailin Lin, and Beijing [sic] Rich Linscience Electronics Company; Order Temporarily Denying Export Privileges,” *Federal Register*, February 7, 2005, Vol. 70, No. 24, pp. 6410-6412, <<http://www.gpoaccess.gov>>.

되었다. 시에는 대만 공장에서 맞춤형 자동차부품 주문을 받았으며, 세관신고서 상에도 “자동차 부품”으로 명기하여 국내 무역 및 밀수방지법을 위반하였다. 대만 공무원이 라벨이 잘 못 붙어 있는 미사일 부품을 적발하면서 본 사건이 개시되었으며, 이후 영국을 통해 다른 선박으로 물품을 환적하는 과정에서 해당 물품이 압수되었다. 대만 조서관은 2005년 2월 시에의 회사 수색을 통해 세관신고서는 발견하였으나 미사일 부품은 찾지 못했다. 시에는 이전에도 체포된 적이 있으며, 미사일 부품을 소지한 한 혐의로 2000년 스위스 공무원에 의해 쥐리히 공항에서 추방당했다.⁵⁶

웨스팅하우스 사, 중국 원자로 건설사업에 입찰: 2005년 2월 18일, 미국수출입은행 (Export-import Bank of the United States) 은 웨스팅하우스사 (Westinghouse Electric Company) 에게 최대 미화 50억 달러 상당의 보증 및 직접차관을 제공에 관한 예비 계약을 허가했다. 이는 중국 절강 (Zhejiang) 성의 산문 (Sanmen) 원자력 발전소 및 광둥 (Guangdong) 성의 옌징 (Yangjing) 원자력 발전소에 건설되는 4기의 AP1000 1000메가와트 원자로 건설에 대한 웨스팅하우스사의 입찰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일부에서는 원자로를 관리하게 될 중국원자력공업총공사 (China National Nuclear Corporation CNNC) 의 핵 확산 내력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중국원자력공업총공사는 1990년대 중반에 원심분리기에 사용할 수 있는 특수원형 자석을 파키스탄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다. 하지만 한 미국 관계자는 최근 부시 행정부 및 국제원자력기구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가 모두 이번 원자로 판매와 관련된 핵 확산 위험은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말했다.⁵⁷ 2005년 2월 25일,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는 웨스팅하우스사가 원자로와 관련 장비 및 서비스를 중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허가서를 발급하였다. 입찰 기한이었던 2005년 2월 28일 전에 입찰서를 제출한 프랑스 기업 아레바 (Areva) 와 러시아 기업 아톰스토로이엑스포르트 (Atomstroyexport) 가 웨스팅하우스사의 경쟁사들이다. 낙찰자는 2006년 초에 발표될 것으로 보이며, 원자로 및 부속품 선적은 그 후인 2007년 중반에 이루어질 것이다.⁵⁸ [관련 내용은 *Asian Export Control Observer* 2004년 10/11 월호 13 페이지 참조]

싱가포르, 메가포트 (Megaport) 구상에 동참: 2005년 3월 10일 미국은 싱가포르 항에서 사용될 최신 방사선감지장비 제공과 관련하여 싱가포르와의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이는 미국 에너지부 산하 국가 핵 안전국 (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 [NNSA]) 이 관장하는 메가포트 구상 (Megaport Initiative) 의 일부이다. 싱가포르는 방사성 물질 및 핵의 불법 선적을 탐지하고 차단하기 위해 고안된 본 구상에 합류하는 첫 아시아 국가이며, 세계적으로는 7번째 국가이다. 미국정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간문[肝門] 형태의 장비는 트럭으로 운반되는

⁵⁶ “Taiwan Man Arrested for Selling Missile Components to Libya,” Hong Kong AFP, February 25, 2005, in FBIS CPP20050225000097; “Man Held over Missile Deal,” *Taipei Times*, February 26, 2005, <<http://www.taipetimes.com>>.

⁵⁷ U.S. Export-Import Bank, “\$5 Billion Preliminary Commitment Approved by Ex-Im Bank for Proposed U.S.-Built Nuclear Power Plants in Mainland China,” Press Release, February 18, 2005, <<http://www.exim.gov>>; Adam Entous, “White House Sees Little Risk in China Nuclear Deal,” Reuters, March 15, 2005, <<http://www.reuters.com>>.

⁵⁸ “NRC Issues Licenses Allowing Westinghouse to Export Nuclear Reactor,” *Financial Times*, February 25, 2005 in Lexis-Nexis, <<http://www.lexis-nexis.com>>; “Foreign Firms Compete to Design, Build Nuclear Reactors in PRC,” *China Daily*, December 14, 2004, in FBIS CPP20041214000020.

모든 컨테이너 화물 전체를 검사하게 된다. 이 시스템은 화물의 목적지 및 출처에 관계없이 항구 및 공항에 들어오거나 나가는 모든 컨테이너들을 검사하는데 사용하게 될 것이다. 주싱가포르 미국대사인 프랭클린 라빈 (Franklin Lavin) 은 “합의서는...테러리스트들에게 명백한 메시지를 보낸다. 싱가포르 내에서는 핵 및 방사선 물질 밀수의 안전지대를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와 필리핀도 향후 몇 개월 안에 메가포트 구상 합의를 체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⁵⁹

볼튼 (Bolton) 미 국무부 차관, 중국에 수출통제 노력 강화 요청:

비확산관련 아시아 고위관리자회담 (Asian Senior-Level Talks on Nonproliferation [ASTOP]) [본간행물 12페이지 관련 기사 참조] 참석을 위해 도쿄에 머무는 동안, 미국 국무부 차관 존 볼튼 (John Bolton) 은 도쿄 어메리칸센터 (Tokyo American Center) 와 일본 국제관계원 (Jap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ffairs) 에서 공동 주최한 행사에서 “Coordinating Allied Approaches to China” 라는 제목으로 연설하였다. 연설을 통해 볼튼 차관은 비록 중국이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관련 기록을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는 하지만, “중국 기업들의 행위 및 중국 정부 측의 반응은 큰 우려의 대상으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볼튼 차관에 따르면, 미국에 적발된 이런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제지 없이 미사일 관련 물품을 계속 거래하는 “연쇄 확산자 (serial proliferators)” 이다. 그는 또한 “플루토늄 처리에 필수적인 화학물이 북한에 선적되는 것을 저지하도록 중국이 미국 정보기관에 도움을 준 경우와 같이 몇몇 성공적인 사례도 있다... [이러한 성공 사례들은] 수출통제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중국 정부에 대한 평가기준을 한층 높여주었다”라고 말을 이었다. 볼튼 차관은 또한 유럽연합 [EU] 이 중국에 대한 무기금수조치를 철회할 가능성에 대해 미국 정부의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⁶⁰

주요 수출통제 이슈

특별 보고서: 성장통 - 대만의 수출통제체계 개요

비확산연구센터 (Center for Nonproliferation Studies) 동아시아 비핵화프로그램 연구원 Mark Wuebbels 와 Patrick Heiman 의 특별 보고서

개요

지난 20여 년간 대만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자체 수출통제규정 전체를 개선해왔다. 대만의 이러한 노력은 부분적으로는 국제 비확산 관행에 순응하도록 한 미국의 압력에 의해

⁵⁹ “Singapore Port First in the Region to Use Radiation Detection System,” Channel News Asia, March 10, 2005, in Lexis-Nexis, <<http://www.lexis-nexis.com>>; Koh Gui Qing, “U.S. Installing Nuclear Detectors in Singapore Port,” Reuters, March 10, 2005, <<http://www.reuters.com>>.

⁶⁰ John Bolton, “Coordinating Allied Approaches to China,” Remarks at event cosponsored by the Tokyo American Center and the Jap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ffairs, Tokyo, Japan, February 7, 2005, <<http://www.state.gov/t/us/rm/41938.htm>>.

촉발된 것이다. 수출 의존적인 대만은 기존에는 수출통제가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미국의 핵심 첨단기술 전수 및 안전성 보장의 수혜자가 됨으로써 정밀물품 통제에 관한 한 미국 정부와 뜻을 같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다. 높은 기술 수준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국내 개발 기술의 수출이 규제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부작용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대만은 더 강력한 수출통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만의 수출통제 연혁

1960년대 초 대만은 가난한 농경국가에서 공업 경제로 탈바꿈하기 위해 수출주도 경제성장 전략을 실행하였다. 그 후 몇 십년간 대만은 간단한 제조업으로부터 기술 집적 생산단계로 빠른 성장을 보였다. 하지만 대만의 국제적 고립이 심해지면서 경제 전략에 위협을 줄 정도로 자본 및 기술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었다. 미국과 일본이 대규모 자금과 기술력을 가지고 이러한 틈새를 공략했다. 1987년 정밀 밀링머신과 컴퓨터 제어기를 소련에 판매한 일본 기업인 도시바 (Toshiba) 와 노르웨이 국영기업인 콩스버그 (Kongsberg) 에 대해 미국이 제재 조치를 내리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미국은 다른 바르샤바 조약 (Warsaw Pact) 국가에도 기술이 흘러 들어 갈 여지가 있다는 것을 우려하게 되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미국은 1988년 대만과 수출통제 협의를 시작했다. 일련의 논의를 거쳐 미국은 소련권 [圖]에 선진 기술을 포함한 전략 물자가 유입되는 것을 제한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 조정위원회 (Coordinating Committee on Multilateral Strategic Export Control [COCOM])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출통제를 실시하도록 대만에 압력을 가했다. 대만 정부는 대만이 아직 다자간 체제에 합류할 능력이 없으며 “첨단 기술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다”⁶¹는 주장을 내세웠고, 협상은 느리게 진행되었다.

현재 거대 기업으로 성장한 타이완 세미컨덕터 매뉴팩처링 (Taipei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mpany [TSMC])과 같은 많은 첨단기술 기업들이 운영 시작 단계에 들어서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대만이 수출통제에 저항했던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기술지원 단절 위협 등을 통해 계속되는 미국 측의 압력으로 인해 1990년 “전략물자 기술 및 기술 데이터 무역 보호에 관한 미 대만연구소 (American Institute in Taiwan) 와 북미문제 협의회 (Coordination Council for North American Affairs) 간의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

양해각서에 따라 대만은 COCOM 규정을 준수하고, 전략 물자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 관련 기술·물자에 대한 실질적인 수출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했다. 2년간 진척이 부진하던 수출통제에 대한 대만 측의 진지한 노력은 대만 정부에서 대외무역법 (對外貿易法 [Foreign Trade Act])을 공포하고, 수입 인증 및 인수 검증 (Import Certification and Delivery Verification [IC/DV]) 프로그램 테스트를 시작하면서 시발되었다. 대만은 대외무역법 13조의 공포를 통해 1993년 IC/DV 프로그램을 실행했으나, 완전한 수출통제 시스템을 갖추게 된 것은 1995년이였다.⁶² 몇몇 분석가들의 영향으로 인해 1994년 이루어진 COCOM의 해체가 늦어지고, 바세나르 협약 (Wassenaar Arrangement) 체결이 느리게 진척되었다.

⁶¹ Richard T. Cupitt & Morgan Flo, “Export Control in Taiwan (ROC),” Center for International Trade and Security, <http://www.uga.edu/cits/documents/html/nat_eval_taiwan.htm>.

⁶² “Introduction to Export Control Regulatory Work,” Website of the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ROC (Taiwan), Board of Foreign Trade, 2002, <<http://www.doc.trade.gov.tw/BOFT>>.

대만은 1997년 첨단기술상품 수출입관리규정 (Regulations Governing the Export and Import of High-Tech Commodities) 을 일부 개정하고, “캐치올 수출통제제도 (catch all)”를 공포함으로써 수출통제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였다. 대만의 “캐치올 수출통제제도”는 2004년 1월 마침내 시행에 들어갔다.⁶³ 이는 원자력공급그룹 (Nuclear Suppliers Group [NSG]) 및 호주그룹 (Australia Group [AG])의 통제 리스트 일부를 편입시키면서 대만의 수출통제 정책을 국제 체제에 부합하게 만들었다. 일 년 후 대만은, “첨단기술상품 통제리스트 카테고리 (Categories of Control List of High-Tech Commodities), “수출통제체제구성국도표 (Country Chart of Export Control Regimes Members)” 및 “첨단기술상품 수출관리 가이드라인 (Administrative Guidelines on Export of High-Tech Commodities)”의 도입을 통해 수출통제 정책을 더욱 명확하게 했다.⁶⁴

수출통제 활동 관련 정부 부처

경제부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MOEA]) 산하의 대외무역국 (Board of Foreign Trade [BOFT]) 이 수출통제 정책 수립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1999년 개정된 FTA에 의해 경제부는 수출통제 및 인가정책 수립, 시행 및 심사권을 갖게 되었다. FTA 5조에 의거하여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ND]) 및 재무부 (Ministry of Finance) 와 같은 관련 당국과 협력하여 대만 의회 (Legislative Yuan) 가 차후에 인준한다는 조건 하에 특정 국가에 대한 “무역 활동에 대한 통제 혹은 금지”를 제안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경제부는 “국가 안전이 위협받을” 시에는 이러한 요구절차를 “간소화”하고 특정 국가에 대한 수출을 보류하거나 “필요한 기타 수단을 취할” 수 있다. 또한 경제부는 수출통제 규정을 공포하고, 수출 허가 절차 및 조치시행을 담당하며, 아시아수출통제세미나 (Asian Export Control Seminar) 와 같은 지역 활동에 참여한다.⁶⁵

수출통제 집행은 경제부가 담당하고 있으나, 법령 집행과 불법수출방지는 재무부 산하의 관세청 (Directorate of Customs Administration) 에서 담당한다.⁶⁶ 일반 세관 (Directorate General of Customs) 에서는 밀수 방지, 세관 신고 및 우편 세관 수출입 감사를 담당한다. 비정부 썬크 탱크로 경제 분석, 기업에 대한 대외활동 프로그램에 관여하고 있는 대만 경제연구소 (Taiwan Economic Research Institute [TERI])는 세관 공무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수출통제 과정에 대한 훈련을 실시한다.⁶⁷

⁶³ “Taiwan to Enforce Catch-All Provision Beginning January 1, 2004,” *NIS Export Control Observer*, October 2003, <http://cns.miis.edu/pubs/nisexcon/pdfs/ob_0310e.pdf>.

⁶⁴ “Introduction to Export Control Regulatory Work,” Website of the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ROC (Taiwan), Board of Foreign Trade, 2002, <<http://www.doc.trade.gov.tw/BOFT>>.

⁶⁵ “Fifteen Countries and Regions Attend the 12th Annual Asia Export Controls Seminar,” *Asian Export Control Observer*, October/November 2004, <http://cns.miis.edu/pubs/observer/asian/pdfs/aeco_0410.pdf>.

⁶⁶ “Directorate General of Customs,” Website of the Ministry of Finance, ROC (Taiwan), <<http://www.weng.dgoc.gov.tw/ep01-frames.htm>>.

⁶⁷ Richard T. Cupitt & Morgan Flo, “Export Control in Taiwan (ROC),” Center for International Trade and Security, <http://www.uga.edu/cits/documents/html/nat_eval_taiwan.htm>.

통제 리스트

FTA는 대만에 중국어로 수출통제 리스트들을 출간하도록 요구했다.⁶⁸ 바세나르협약 (Wassenaar Arrangement),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MTCR]), NSG 및 AG용 통제 리스트가 영어로 작성되어 있어 대외무역국은 여러 기관에 관련 리스트 작성 및 번역보조를 요청했다. 경제부 산하의 산업발전국 (Industrial Development Bureau) 은 생화학무기관련 통제 리스트를 작성하였으며, 국방부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와 합동으로 미사일관련 통제품목 리스트를 작성하였다. 또한 대만 의회의 원자력위원회 (Atomic Energy Council) 에서 원자력공급국그룹과 함께 통제 리스트를 작성하였다.⁶⁹ 기관 전문성에 따른 이런 역할 분담은 수출통제 착수의 첫 단계였다. 하지만 1999년 12월부터 경제부에서 단독으로 대만 통제리스트 개편 및 종합 작업을 담당하고 있다.⁷⁰ 경제부에 따르면 통제 리스트는 “바세나르 협약, 원자력공급국그룹, 미사일기술통제체제 및 기타 관련 통제 리스트”를 기초로 작성되어 왔다. 대만은 이러한 공급체제에 직접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 품목을 통제리스트에 포함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 및 근거를 동원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부는 체제 회원들로부터 정보를 입수하거나 최근 개정내용을 온라인을 통해 입수한 후 중국어로 번역하는 방식을 통해 리스트를 관리하고 있다. 대만 수출통제 관계자들은 또한, 일본과 미국의 관계자들과 협력하여 통제 리스트 및 수출통제규정 개정 문제를 논의한다.

미국 조지아 대학의 무역 및 국제안보 센터 (Center for Trade and International Security [CITS])의 평가에 의하면 경제부는 과거에 수출 목적지를 세 카테고리로 구분했었다. 첫 번째 카테고리에 속하는 국가들은 제한 구역으로서 북한, 이란, 이라크, 리비아 및 기타 UN 통상 금지 명령 하에 있는 국가들이다. 두 번째 카테고리에 속하는 국가들은 수출통제체제의 회원 자격을 가진 국가들이다. 마지막 카테고리에는 중국을 포함하여 첫 번째와 두 번째 카테고리에 속하지 않은 나머지 국가 전체가 해당된다.⁷¹ 경제부는 2003년 12월 30일 카테고리를 수정하였다. 개정 사항에서는 이라크, 이란, 리비아, 북한, 수단, 시리아, 쿠바 및 중국을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였다.⁷² 기술적으로 여전히 세 번째 카테고리에 속하는 중국은, 반도체 등과 같은 산업기술의 이전 및 투자에 대해 사전 인가가 요구되는 부가규정 적용대상 국가이다.⁷³

⁶⁸ Yun Chao,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Board of Foreign Trade (BOFT), e-mail correspondence with author, on February 23, 2005.

⁶⁹ “Introduction to Export Control Regulatory Work,” Website of the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ROC (Taiwan), Board of Foreign Trade, 2002, <<http://wwwdoc.trade.gov.tw/BOFT>>.

⁷⁰ The Foreign Trade Act promulgated on February 5, 1993, <<http://wwwdoc.trade.gov.tw/BOFT>>.

⁷¹ Richard T. Cupitt & Morgan Flo, “Export Control in Taiwan (ROC),” Center for International Trade and Security, <http://www.uga.edu/cits/documents/html/nat_eval_taiwan.htm>.

⁷² Yun Chao,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Board of Foreign Trade (BOFT), e-mail correspondence with author, on February 23, 2005.

⁷³ “Zaidalu dichu cong shi touzi huo jishu hezuo xuke banfa” (Statute on Investment and Technology Cooperation in Mainland China), Website of the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Board of Foreign Trade, <<http://twbusiness.nat.gov.tw/claw6.asp>>.

수출 목적지	국가	허가 과정
카테고리 1	이라크, 이란, 리비아, 북한, 수단, 시리아, 쿠바 및 UN 통상 금지 명령 하에 있거나 평화 위협 국가들	인증 당국(기관)에 의한 사례별 사전인가 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허가 거부 대상국임.
카테고리 2	수출통제체제 회원국	수출 허가 필요; 규정에 따른 신청 반드시 필요
카테고리 3	첫 번째와 두 번째 카테고리에 속하지 않은 국가들	수출 허가 필요; 규정에 따른 신청 반드시 필요
Sources: "Introduction to Export Control Regulatory Work," Website of the Taiwan's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Board of Foreign Trade, 2002 (http://www.doc.trade.gov.tw/BOFT); e-mail interview with official at the Board of Foreign Trade by Mark Wuebbels, August 13, 2004, (official's name withheld by request).		

허가 절차

경제부 규정에 의하면 전략 물자 및 기술 수출입 기업들은 모두 수출입 허가를 신청 및 등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출입 기업들은 대외무역국에 신청서 검토를 의뢰한다. 하지만 신주 과학 공업단지(新竹科學園區; Hsin-chu Science-based Industrial Park and Export Processing Zone)에 위치한 수출입 기업들은 직접 신주 과학 공업단지 혹은 다른 적정한 수출가공지역 관리처를 이용한다.⁷⁴ 신청 절차의 일부로 수출입 기업들은 FTA의 조항13을 준수하고 운송되는 물품의 용도와 사용자에 대해 "정직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신청에 준하여 대외무역국 혹은 상기 명기된 기관들은 용도가 명기된 개별 수출허가서 (Individual Export Permit) 를 발급한다. 군수품과 미사일기술 통제체제 관련 기술 분야의 경우에는 경제부와 국방부가 협의하여 검토한다. 총괄적으로 862개 품목 즉, 대만의 현 관세 목록에 올라있는 전체 물품의 약 80%의 물품을 경제부에서 감독한다.⁷⁵

단속 및 집행 문제

조지아 대학의 무역 및 국제안전 센터는 1999년 평가에서 대만 정부가 수출통제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수출통제규정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 없다는 점이다. FTA 27조항에 위반자는 최고 2년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고 30만 대만달러 [약 미화 9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다. 하지만 수출허가를 받는 물품의 평균가치가 약 미화 25만 달러임을 고려하면, 이러한 벌

⁷⁴ As part of its export and technology oriented industrial policy, the Taiwanese government established several special technology parks and Export Processing Zones throughout Taiwan. Companies within these special zones receive preferential treatment such as tax breaks and expedient process clearance.

⁷⁵ "2003 Taiwan Commercial Guide," US & Foreign Commercial Service, <<http://www.buyusa.gov>>.

금은 큰 억제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진다.⁷⁶ 위법자에게 최고 2년형을 선고할 수 있기는 하지만 고발 혹은 유죄판결이 내려지는 빈도수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이 역시 효과적인 억제수단은 아니다.

CITS 보고서는 대만의 수출통제 규정 집행 능력 부족은 관련 기관들이 중소기업들과 의사소통 및 수많은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규정을 집행하는데 따른 어려움에서 기원한다고 지적했다.⁷⁷ 경제부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관련된 규정 집행 혹은 규정 준수 문제 관한 한 큰 어려움은 없다고 주장한다.⁷⁸ 하지만 최근 수출통제 위법 사례들은 이러한 주장에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2000년부터 중동지역에 대한 불법 수출 사례에 대만 기업들이 수차례 관련되었으며, 최근 미국의 이라크 조사단 (Iraq Survey Group) 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 (Duelfer 보고서) 에도 대만의 수출통제 집행능력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전 이라크 정권은 군사력을 확대하기 위해 2001년 1월 여러 대만 기업들과 접촉을 시작하였다. 유엔사찰위원회 (UN Monitoring, Verification and Inspection Commission [UNMOVIC]) 조사관들은 쉬홍 기기사 (She Hong Machinery Company) 에서 컴퓨터 수치 제어 기기 및 기타 이라크에 군사 장비를 판매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관련 내용은 10/11 호 참조] 또한 2004년 12월 27일 미국은 이란비확산법 2000 (Iran Nonproliferation Act of 2000) 을 위반한 대만 기업 에코마사 (Ecoma Enterprise) 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했다.⁷⁹ 최근에 일어난 이런 이라크 및 이란으로의 불법 기기 수출 때문에 대외무역국은 2005년 1월 13일 발표를 통해, 세관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수출기업들은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게 되며, 차후 해당 기업들에 대한 수출 검사가 강화될 것이라고 공표했다.

대만의 또 다른 수출통제 위반 사례는 중국으로의 정밀기기 및 기술이전과 관련되어 있다. 공개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건으로는 대만 기업인 퀴닝 하이테크사 (Queening Hi-Tech Corporation) 가 중국으로의 정밀기술 이전에 관여한 사건이 있다. 이 기업은 1998년 적외선 촬영장치 (ITI) - 야간 촬영 혹은 열상법에 이용되는 기술 - 를 중국에 판매한 혐의로 최근 조사를 받았다.⁸⁰ 이 사건이 널리 알려진 것은 신주 과학 공업단지의 생산물이 국가안보 및 대만 군대에 전자 전투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당시 대만 대통령 리명휘 (李登輝) 의 발표 이후, 공업단지에 위치한 기업들이 대중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중국으로 이전된 기술은 퀴닝사의 캘리포니아 자회사에서 개발된 것으로 미국 관리자가 기술 이전을 적발하였다.⁸¹ 2000년 11월 및 2001년 1월 두 번에 걸쳐 타이완 세미콘덕터 매뉴팩처링 사 (TSMC) 직원이 상하이에 위치한 세미콘덕터 매뉴팩처링 인터내셔널 사 (Semiconductor Manufacturing International Corporation [SMIC])에 불법으로 기술을 이전한 사건

⁷⁶ Average export volume per licenses was calculated using statistics provided by Taiwan's Board of Foreign Trade.

⁷⁷ Richard T. Cupitt & Morgan Flo, "Export Control in Taiwan (ROC)," Center for International Trade and Security, <http://www.uga.edu/cits/documents/html/nat_eval_taiwan.htm>.

⁷⁸ Yun Chao,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Board of Foreign Trade (BOFT), e-mail correspondence with author, on February 23, 2005.

⁷⁹ "Imposition of Nonproliferation Measures Against Nine Foreign Entities, Including a Ban on U.S. Government Procurement, and Removal of Penalties From One Entity," Federal Register, Vol. 70, No. 1, January 3, 2005, pg. 133.

⁸⁰ "Taiwan Military Tech Firm Executives 'Cooperative' in Illegal PRC Sale Probe," *The China Post*, June 7, 2004, in FBIS CPP20040607000185.

⁸¹ "Task Force Formed to Check Leaks of High-Technology Secrets: Official," Central News Agency (Taiwan), March 13, 2002.

이 발생했다.⁸² TSMC사의 대내외적으로 높은 인지도로 인해 이 사건은 대만 정부의 국가안보 및 수출통제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수출통제 논란 가열

TSMC사 사건은 차후 중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건설하는데 대한 허가 요청과 더불어 국가안보뿐 아니라 중국에 대한 하이-테크놀로지 기술 이전 및 고도로 훈련된 대만 전문가들의 중국방문을 통한 기술이전 통제 필요성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다. 그 결과, 범녹색연맹 (Pan-Green coalition) 파트너인 민주진보당 (Democratic Progressive Party [DPP]) 과 대만단결동맹당 (Taiwan Solidarity Union [TSU]) 은 국가안보 문제의 하나로서 기술이전 관련 규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 정당들은 대만 산업의 중국이전과 기술전달은 중국 군대의 현대화에 도움을 주게 되어 본질적으로는 대만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중국과의 정치, 경제관계에서 더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국민당 (Nationalist Party [KMT]) 은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에 어떠한 제약도 없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기술보호법 (National Technology Protection Act) 과 기타 규정

2000년 12월 중국으로의 불법 첨단기술 이전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특별 조사팀이 구성되었을 뿐 아니라, 첸슈이비안 (陳水扁 [민주진보당]) 대통령 행정부는 국가과학위원회 (National Science Council [NSC]) 에 첨단기술 이전에 대한 신규 법률안 기초 작업을 위임했다. 2002년에 국가과학위원회 국가기술보호법으로 알려진 법률초안이 제출되었다. 이 법률은 현재의 국가안보법 (National Security Law), 국가 기밀보호법 (National Secrets Protection Law), 저작권법 (Copyright Law), 및 대만-중국 국민 간 관계 법령 (Statute Governing Relations between the People of the Taiwan Area and Mainland Area)⁸³ 등을 보충하는 것이며 통과될 경우, 행정 부처들과 협력관계에 있는 국가과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첨단기술 품목을 구분하는 신규 법안을 시행하게 된다: 1) 국가안보에 중요한 기술; 2) 경제적 경쟁력에 중요한 기술; 3) 국가안보 및 경제적 경쟁력에 덜 중요한 기술

해당 법률은 법률 위반에 대한 규제권을 경제부에서 국가과학위원회로 넘겨줄 뿐 아니라, 선정된 첨단기술 제품, 기술, 연구 결과 및 기타 관련정보 수출 범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켜, 최고 1천만 대만 달러 [약 미화 37만 달러] 까지 벌금을 부과하고, 최고 7년 반까지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⁸⁴ 이는 현재의 벌금보다 훨씬 많은 것이다. 또한, 국가기술보호법은 반도체 생산, 반도체 디자인, 항공, 조선, 마취 분야의 직원들을 규제하고, 관련 전문가들이 중국에 고용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간주 수출 (deemed export)” 까지 규제대상에 포함하게 된다.⁸⁵

⁸² “Task Force Formed to Check Leaks of High-Technology Secrets: Official,” Central News Agency (Taiwan), March 13, 2002.

⁸³ Michael Chase, Kevin L. Pollpeter, James C. Mulvenon, “Shanghaied? The Economic and Political Implications of the Flow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vestment across the Taiwan Strait,” RAND National Defense Research Institute, July 2004, <http://www.rand.org/pubs/technical_reports/2005/RAND_TR133.sum.pdf>.

⁸⁴ Ko Shu-ling. “Sensitive Technologies’ Bill Goes before Cabinet,” *Taipei Times*, September 25, 2002.

⁸⁵ “Deemed exports” are transfers of knowledge or “know-how” to foreign nationals.

본 미결법안에 대해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산업 지도자 및 과학자들은 이 법안에 반대해 왔다. 많은 산업 지도자들은 전문가들의 중국 진출을 금지하는 것은 자유로운 인재 이동을 방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만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과학자이며, 중국학술원 (Academia Sinica) – 미국 과학아카데미 (American Academy of Sciences) 에 상응하는 기관 – 원장인 리유안쯔 (李遠哲) 는 해당 법안의 인재이동 통제 부분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였다.⁸⁶

국가기술보호법은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으며, 다른 경쟁 규정인 정밀기술보호법 (Sensitive Technology Protection Act) 과 맞부딪치게 되었다. 대만단결동맹 당원인 입법자 린치룽 (林志隆) 은 중국 투자를 국가보안의 일부로 포함시키고, 첨단 기술 분야 전문가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도록 법안을 구상했다. 또한, 경제부,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MOE]), 국방부, 교통통신부 (Ministry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s [MOTC]) 및 중국으로의 첨단 기술 이전 및 투자를 명명하고 규제할 특별 기관을 포함하여 좀 더 강건한 부처간 위원회를 만들어 기술이전을 규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린은 인터뷰에서 국민당이 이렇게 광범위한 법안에 동의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⁸⁷

결론

대만 정부는 수출통제 규정을 반복적으로 개정하고, 미국 및 일본의 해당 기관과 협력하며, 아시아 수출통제 세미나 (Asia Export Control Seminar) 와 같은 지역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다자간 수출통제 체제 회원국에게 요구되는 자격사항의 많은 부분을 충족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수출통제 시스템에는 여러 가지 약점이 남아 있다. 특히 행정 처벌과 면허 부분이 약점이다.

수출통제와 관련된 대만 정부의 초기 노력은 미국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비정상적인 기술 이전을 막는데 목적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대 중국 기술 이전에 대한 대만 내부의 논의는 수출통제와 국가보안 간의 연계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쉐 행정부와 범 녹색연합 내의 독립적 경향을 가진 정당들은 수출통제를 중국에 대한 대만의 영향력 강화 수단으로 이용하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수출통제 문제는 중국-대만 간의 좀더 광범위한 [그리고 아주 정치적인] 문제와 뒤엉키게 되었다. 기술 이전에 대한 규정 문제가 범녹색연합 정당들에게 가장 우선적인 문제로 남아있기는 하지만, 신규 법안은 최근 분할된 의회에서 인준 과정을 거쳐야 한다. 2004년 의회 선거에서 범녹색연합 정당들이 다수의석을 차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전략산업 부분의 기술이전 및 투자에 대한 규정이 더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⁸⁶ "Top Scientist Speaks Against Regulations Limiting Cross-Straight Employment," *Taipei Times*, April 23, 2002.

⁸⁷ Interview with Legislative Yuan Member Lin Chih-Lung (林志隆), by Mark Wuebbels, Taipei, Taiwan, July 14, 2004.

국제 소식

우크라이나, 이란 및 중국에 대한 불법 무기판매 주장에 대해 조사

[본 사건에 대한 이전 기사는 NIS Export Control Observer 2005년 2월호에 실렸다.]

2005년 2월 2일, 우크라이나 의회의 조직범죄 및 부패 방지 위원회 (Ukrainian parliament's Committee on the Fight against Organized Crime and Corruption) 부회장인 흐리호리 오멜첸코 (Hryhoriy Omelchenko) 은 12대의 Kh-55 (NATO 명칭 AS-15A) 와 Kh-55SM (AS-15B) 핵 가능 공중발사순항미사일 (Air-Launched Cruise Missiles [ALCM])이 우크라이나에서 이란 및 중국으로 불법 수출되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조사가 진행 중임을 공표했다.⁸⁸

미사일 수출은 키예프 전략무기감축 I 조약 (START I)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1992년 리스본 의정서 (Lisbon Protocol) 에 서명함으로써 조인국이 된 우크라이나는 이 조약에 따라 소비에트 연합 해체 후 우크라이나에 남겨져 있던 Kh-55 공중발사순항미사일을 수반하는 Tu-160와 Tu-95MS 폭격기를 러시아에 반환하거나 무장해제하였다.⁸⁹ 하지만 오멜첸코에 의하면 프로그레스 (Progress) 무역회사 - 국영 무기 무역업체 스페츠엑스포르트 (Spetseksport) 의 자회사 - 는 2000년 4월 중국에, 그리고 2001년 5월 이란에 불법으로 미사일을 수출했다. 또한 오멜첸코에 따르면 프로그레스사는 이란에 KNO-120으로 불리는 관련 육상표적시스템을 공급하였다.⁹⁰

오멜첸코의 서한은 우크라이나 무기수출 기업인 우크르스페츠엑스포르트 (Ukrspetseksport) 사 사장인 발레리 샤마로프 (Valeriy Shmarov) 에 대한 체포요구로 시작한다. 이 서한에 따르면 2004년 2월 미사일판매 관련 범죄가 밝혀졌다. 항공화물 회사인 우크라이비아자카즈 (UkrAviaZakaz) 의 임원이며 우크라이나 안보국 (Ukrainian Security Service [SBU]) 직원이었던 예브도키모프 (V. V. Yevdokymov) 은 3명의 러시아인 - 올레그 오르로프 (Oleg G. Orlov), 쉘렌코 (Ye. V. Shilenko), 쉬키노프 (G. K. Shkinov) - 과 함께 당시 프로그레스 사의 임원이었던 사모일렌코 (S. M. Samoylenko) 와 미사일 판매에 협력한 혐의로 기소되었다.⁹¹

2001년 앙골라에 불법으로 무기를 판매하여 유엔안전보장이사회 (U.N. Security Council) 에 의해 기소된 러시아 무기 무역상 오르로프와 쉘렌코는 2000년 초, 미사일 판매와 관련하여 우크르스페츠엑스포르트 (Ukrspetseksport) 에 접근하였다.⁹² 두 사람은 Kh-55 미사일 구매에 필요한 소비자 인증서본

⁸⁸ "Deputatskiy zapit" [Deputy's Request], Sobor website, February 2, 2005, <http://www.sobor.org.ua/vr/dep020205_2.htm>.

⁸⁹ "Protocol to th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on the Reduction and Limitation of Strategic Arms," in NIS Nuclear and Missile Database, Nuclear Threat Initiative website, <<http://www.nti.org/db/nisprofs/fulltext/treaties/start1/s1lis.htm>>.

⁹⁰ "Deputatskiy zapit" [Deputy's Request], Sobor website, February 2, 2005, <http://www.sobor.org.ua/vr/dep020205_2.htm>.

⁹¹ "Deputatskiy zapit" [Deputy's Request], Sobor website, February 2, 2005, <http://www.sobor.org.ua/vr/dep020205_2.htm>.

⁹² "Deputatskiy zapit" [Deputy's Request], Sobor website, February 2, 2005, <http://www.sobor.org.ua/vr/dep020205_2.htm>. Pavel Felgenhauer, "Great Weapons for Rogues," *Moscow*

아니라 러시아 국방부 및 국영 무기 거래기업인 로즈바이루제니에 (Rosvooruzheniye) 에서 발급되는 문서를 허위로 꾸몄다. 이러한 허위 문서들은 우크라이나 수출통제국 (Ukraine's State Export Control Service) 에 접수되었으며, 판매 허가를 받았다. 예프도키모프는 2000년 4월 항공편으로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서 중국으로 운송할 준비를 하였다.⁹³ 그가 세관에 제출한 문서에는 해당 화물이 러시아의 한 공항으로 가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미사일은 중국으로 운송되었다.⁹⁴ 전 우르크스페츠엑스포트의 수뇌인 말리에프 (V. I. Malyev) 는 문서가 허위이며 미사일이 중국으로 간다는 것을 소문에 의해 알고 있었다. 프로그래스 사는 댓가로 미화 60만 달러를 받았다. 키프로스 에 위치한 두 회사가 미국 회사인 테크노칼리티 (Technocality) 사를 거쳐, 부다페스트에 위치한 센트럴 유러피안 인터내셔널 뱅크 (Central European International Bank) 을 통해 프로그래스 사에 대한 대금을 지불했다.

이런으로 운송된 미사일 6개도 미화 60만 달러에 팔렸으며, 관련 육상표적장비도 미화 20만 달러에 판매되어 테크노칼리티사를 통해 대금이 지급되었다. 키프로스 기업 및 이란 기업 간의 정유 장비 제공 허위 계약을 이용해 대금 이체가 이루어졌다. 또한 이란과의 거래 내역에 미사일에 대한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어 우크라이나 전문가가 001~2003년에 걸쳐 여러 차례 이란을 방문하였다.

2004년 10월 우크라이나 안보국은 임원인 슈마로프 (Shmarov)를 포함한 우르크스페츠엑스포트 직원의 미화 1천3백만 달러 규모의 횡령, 미사일 판매 및 기타 불법 무기판매와 관련하여 수사에 착수하였다. 오멜첸코는 우크라이나 안보국 국장 레오니드 데르카츠 (Leonid Derkach) 가 이오르 스메쉬코 (Ihor Smeshko) 로 교체 되었던 2003년 가을에서야 안보국이 Kh-55를 시에라리온과 에리트레아에 불법으로 판매한 사건을 포함한 불법 무기수출을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⁹⁵

[편집자 주: 서양에서는 “켄트” 미사일로 알려진 Kh-55 미사일은 전략 공중발사순항미사일 (착탄 거리가 600킬로미터를 넘는 미사일)은 전략무기감축 (START) I 규칙을 적용받는다. Kh-55 미사일은 장거리 변형 미사일로 최대 착탄거리가 3000킬로미터이다. Kh-55와 Kh-55SM은 200킬로톤의 핵탄두를 실을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Kh-55 비핵(非核) 변형은 실제로 사용된 적이 없다; Kh-55SM의 비핵 변형이 Kh-555이다.⁹⁶]

소비에트 연합이 해체된 이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중(重) 폭격기 대부분과 관련 무기를 사들인 후에도, 우크라이나에는 다수의 단거리 Kh-22 미사일과 Kh-55 미사일이 남아 있었다. 불법 수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미사일은 부품별로 판매되며, Kh-55의 고성능 터보엔

Times, February 15, 2005, <<http://www.themoscowtimes.com>>.

⁹³ “Deputatskiy zapit” [Deputy’s Request], Sobor website, February 2, 2005, <http://www.sobor.org.ua/vr/dep020205_2.htm>.

⁹⁴ “Utechka informatsii iz Apellyatsionnogo suda Kieva: rakety iz Ukrainy okazalis v Kitaye i Irane!” (Leaked information from Kiev’s Appellate Court: Missiles from Ukraine turn out to be in China and Iran!), *Obozrevatel* (Kiev), February 3, 2005, in *Integrum Techno*, <<http://www.integrum.com>>.

⁹⁵ “Deputatskiy zapit” [Deputy’s Request], Sobor website, February 2, 2005, <http://www.sobor.org.ua/vr/dep020205_2.htm>.

⁹⁶ “Russian Heavy-Bomber Delivered Missiles,” NIS Nuclear and Missile Database, Nuclear Threat Initiative

진인 R95-300을 역진시킬 가능성도 있다. Kh-55는 핵탄두만을 달고 중(重) 폭격기-Tu-95MS와 Tu-160-용으로만 이용되도록 고안되었다. 이란이나 중국에서 항공기 날개 아래 부분에 Kh-55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kh-55를 개조해야만 할 것이다. 미사일 숫자가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개조가 가능할지는 모르나, 그만큼의 노력의 가치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다이렉티브이 (DirecTV) 사, 수출관리규정 위반으로 벌금형

다이렉티브이 그룹은 미국 수출관리 및 무기관리 규정 위반, 특히 1993년부터 2003년 사이 위성 음성 및 데이터 전송에 사용되는 VSAT (Very Small Aperture Terminal [역주: 초소형 안테나를 사용하는 지상의 송수신국]) 장비에 대한 판매 제한 조항을 준수하지 못하여 미화 5백만 달러의 벌금을 내는데 동의했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다이렉티브이 사는 메릴랜드주 저먼타운 소재 자회사인 휴즈 네트워크 시스템스 (Hughes Network Systems) 를 통해 장비를 개조하여 “비화 (secure) 위성 통신을 발전시킬 신규 능력을 가진 외국 구매자들”인 중국, 한국, 인도, 터키 및 남아프리카에 판매하였다.

또한 휴즈 사는 중국 구매자가 외부 암호화 장비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 주었다. 국무성 자료에 의하면 중국 군대는 자체 암호화 장비와 연계하여 휴즈 사의 네트워크를 통해 비화 데이터 (secure data) 를 전송하기 위해 이 장비를 사용하려 했다.⁹⁷ 다이렉티브이 사는 2004년 6월 자진해서 미국 정부에 위반 사실을 신고했다.⁹⁸

문제가 된 위법 행위는 예전에는 휴즈 일렉트릭 (Hughes Electronics Corporation) 사로 알려져 있던 다이렉티브이 사가 이전 수출관리 위법 관련 화해합의서를 협의하는 동안 일어났다. 2003년 휴즈 일렉트릭 사는 미국의 정밀 우주항공기술을 중국에 불법으로 이전하여 국제무기거래규정 (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 [ITAR])을 위반한 데 대해 3천2백만 달러의 벌금을 내는데 동의하였다. 합의 내용에 의해 휴즈사는 3년간 내부 수출감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국제 무기거래 규정에 관련된 모든 활동을 감독할 독립적인 특별감사관을 임용하도록 명령받았다.⁹⁹

다이렉티브이 사는 최근 위반 사실을 발견한 이후 6개월 동안 특별감사관에게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2003년 화해합의서 내용도 위반하게 되었다. 국무부 차관보 링컨 블룸필드 (Lincoln Bloomfield) 는 이러한 위반 사실은 “[다이렉티브이 사]의 2003년도 합의 내용의 준수, 서약 및 시행과 관련하여 국무부 측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고 말

website, <<http://www.nti.org/db/nisprofs/russia/weapons/bombers/bombers.htm>>.

⁹⁷ Renae Merle, “DirecTV Fined Over Subsidiary’s Export Violations,” *Washington Post*, February 2, 2005, <<http://www.washingtonpost.com>>.

⁹⁸ Giovanna Cinelli, “First State Department Enforcement Action of 2005: In the Matter of: The DirecTV Group Inc. and Hughes Network Systems, Inc.,” Views, Law Firm of Patton Boggs LLP February 18, 2005, <http://www.pattonboggs.com/Views/releases/2005_02_18_state_dept_action.htm>.

⁹⁹ Giovanna Cinelli, “First State Department Enforcement Action of 2005: In the Matter of: The DirecTV Group Inc. and Hughes Network Systems, Inc.,” Views, Law Firm of Patton Boggs LLP February 18, 2005, <http://www.pattonboggs.com/Views/releases/2005_02_18_state_dept_action.htm>.

했다. 국무부에 따르면, 다이렉티브이 사는 “방위 품목 및 기술 데이터 수출을 감시하도록 한 법률 및 규정 요구사항을 직원들에게 숙지시키지” 못한 무능력함을 보여주었다. 합의서에 따라 다이렉티브이 사는 새로운 특별감사관을 임명해야 하며, 2005년 5월 14일까지 해외에 방위 장비를 판매하는데 필요한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다.¹⁰⁰

워크샵 및 컨퍼런스

호주와 인도네시아, 생물무기금지협약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에 대한 지역 워크샵 공동 주최

호주와 인도네시아 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생물무기금지협약에 대한 지역 워크샵이 2005년 2월 21~25일까지 호주 멜버른에서 열렸다.¹⁰¹ 보건 및 외교, 질병통제센터 및 과학 기관을 대표하는 아시아 태평양 12개국 관계자 및 전문가가 행사에 참여하였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이런 종류의 워크샵이 열린 것은 처음이다.¹⁰² 워크샵은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저지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생물무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워크샵 참가자들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생물테러 가능성을 저하시킬 방안과, 안전을 강화하고 병원균과 독소를 감독하며, 생물 과학자들이 지켜야 할 효과적인 규약을 세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본 워크샵은 해당 지역 관계자들이 생물무기금지협약 조항을 적절한 국가 규정으로 도입하고, 2006년 후반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인 제6차 생물무기금지협약 검토 회의회 (BWC Review Conference) 에 제출할 진행 보고서 준비에 도움을 주려는 의도로 기획되었다. 참가자들은 또한 유엔안보리결의 1540 (UNSCR 1540) 에 지시된 효과적인 수출관리 시행에 대해 논의했다.¹⁰³

워크샵 개요 연설에서 호주 국방부의 로버트 힐 (Robert Hill) 상원의원은 “생물테러와 생물무기 확산 방지는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한 국가에 의해서는 보장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생물무기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지역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¹⁰⁰ Renae Merle, “DirecTV Fined Over Subsidiary’s Export Violations,” *Washington Post*, February 2, 2005, <<http://www.washingtonpost.com>>.

¹⁰¹ “Australia Hosts Conference on Bio-Terrorism, Melbourne: 21-25 February 2005,” Australian High Commission in Malaysia press release, February 22, 2005, <<http://www.australia.org.my/home/index.cfm?ArtID=231>>.

¹⁰² “Australia Hosts Conference on Bio-Terrorism, Melbourne: 21-25 February 2005,” Australian High Commission in Malaysia press release, February 22, 2005, <<http://www.australia.org.my/home/index.cfm?ArtID=231>>; “Opening Speech: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Workshop, Melbourne, 21 February 2005,” Website of Australia’s Minister of Defence, <<http://www.minister.defence.gov.au/HillSpechtpl.cfm?CurrentId=4646>>.

¹⁰³ “Opening Speech: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Workshop, Melbourne, 21 February 2005,” Website of Australia’s Minister of Defence, <<http://www.minister.defence.gov.au/HillSpechtpl.cfm?CurrentId=4646>>; “Defence Minister to Open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Regional Workshop,” Australian Department of Defence website, February 20, 2005, <<http://www.defence.gov.au/media/AlertTpl.cfm?CurrentId=4642>>; “Regional Cooperation Will Stop Bioterrorism, Hill Says,” ABC News Online, February 21, 2005, <<http://www.abc.net.au/news/newsitems/200502/s1307323.htm>>.

힐 상원의원은 또한 “[생물테러] 위협이 실제로 있을 뿐 아니라 점차 커져가고 있다. 이는 생물과학 및 생물공학이 빠르게 발전하고, 이러한 정보 및 관련 물질의 이용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사용될 대량살상무기를 구하는 비국가 행위자들의 출현과 맞물려 있다.”고 말을 이었다. 힐 상원의원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앞으로 이런 종류의 회의를 지원할 것”이며, 캔버라 시도 “무기관리문제 및 군비철폐에 익숙해지도록 아시아 태평양 지역 관계자들에 대한 단기 훈련 과정”을 준비할 것이라고 한다.¹⁰⁴

힐 상원의원은 호주가 2004년 두 번에 걸쳐 중요한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관련 지역 행사 - 핵 및 방사선 테러 방지에 초점을 둔 핵 안정 및 안보 관련 아시아 태평양 장관급 회담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 에 가입한 국가들 간의 회담으로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이 좀더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을 더 개방하는 방법에 대해 검토했다 - 를 주최하였다고 말했다. 호주는 또한 2005년에 제20회 호주그룹 총회 및 제3회 아시아 수출 관리 정책 고위급 회담을 주최하게 될 것이다. 2006년도에는 호주가 비핵무기 및 정밀기술 수출관리방안을 모색하게 될 바세나르 협약 (Wassenaar Arrangement) 의장을 맡게 될 것이다.¹⁰⁵

특별 보고서

수출관리 및 비확산 진전에 대한 동아시아 정부들의 보고서: 1540 위원회 제출 보고서 검토

2004년 4월 28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UN Security Council) 는 UN회원국들이 테러리스트들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획득, 혹은 이용이나 이러한 무기의 운송 수단을 저지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과적인 법률”을 제정 및 실행하도록 강제할 결의 1540을 만장일치로 승인하였다. 결의 1540 4항에 의해 각국은 “6개월 내에[2004년 10월 28일] 위원회에 본 결의 내용 도입에 따라 취해진 조치 내용 혹은 본 결의 실행을 위해 의도된 조치 사항에 대한 첫 번째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004년 12월/2005년 1월호 관련 내용 참조]

2005년 3월 7일을 기준으로 유럽연합을 포함한 105개 국가들이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1540 위원회 (1540 Committee) 는 브루나이 왕국,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한국, 태국 및 베트남을 포함한 여러 동아시아 국가로부터 보고서를 제출 받았다. 각국의 보고서들은 공개 자료이며, 간략한 것에서부터 상세한 것까지 망라되어 있지만, 각국의 비확산 정책을 조망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모든 국가들에 대해 “적절하고 효과적인 국가 수출 및 환적 통제방안을 구축, 발전, 재검토 및 관리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 1540에 의해, 각국은 보고서 제출을 통해 해당국가의 국내 수출 관리 상태에 대해 재정비하게 되었다.

[편집자 주: 1540 위원회 웹사이트에 따르면, 브루나이 왕국, 한국, 베트남에서 제출한 보고

¹⁰⁴ “Opening Speech: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Workshop, Melbourne, 21 February 2005,” Website of Australia’s Minister of Defence, <<http://www.minister.defence.gov.au/HillSpechtpl.cfm?CurrentId=4646>>.

¹⁰⁵ “Opening Speech: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Workshop, Melbourne, 21 February 2005,” Website of Australia’s Minister of Defence, <<http://www.minister.defence.gov.au/HillSpechtpl.cfm?CurrentId=4646>>.

서는 번역이 이루어져야한다. 본 자료의 작성을 위해 한국에서 제출된 보고서는 한국 정부 대표를 통해 확보하였으나, 베트남 및 브루나이의 보고서는 확보 할 수 없었다. 캄보디아, 라오스, 몽골, 미얀마 및 북한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모든 공개 보고서는 (<http://disarmament2.un.org/Committee1540/report.html>)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동북 아시아

중국

2004년 10월 4일 제출된 중국의 국가 보고서는 중국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선언을 재차 확인하고, 국내 수출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국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진행 중인 노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해당 보고서는 또한 중국의 특별 관리 지역 - 홍콩 및 마카오 - 에서의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법률 기반과 이행에 대해 간단히 논의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는 중국의 수출관리 체계의 이행, 실행 및 처벌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 및 설명하고 있다. 보고서에는 또한 1990년 후반부터 도입되어 특히 2002년에 공포된 주요 수출관리규정을 요약하면서, 다자간 수출관리체제에서 유지하고 있는 통제리스트와 유사하도록 관리하며 중국 정부에서 내부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통제리스트에 대해 강조하였다. 또한, 과거에는 공개하지 않았던 세균배양, 방사선 도구 및 핵의 안전, 비축 및 보호에 관한 규정과 관련 대책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였다. 보고서에 명기된 규정 방안 중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및 물리적 보호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핵물질 관리 규정
- 방사성 동위원소 및 방사선 기구에 의한 방사선 오염 방지 및 보호에 관한 규정
- 방사선 오염 방지에 대한 중국 법률
- 세균 배양 관리, 비축에 대한 중국 규정 및 의료용 세균배양 관리, 비축에 대한 중국의 대책
- 통제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중국 규정

보고서는 또한 훈련, 대외활동 (outreach), 국경통제와 기타 이행 활동에 대한 중국 정부의 관심이 증대되었다는 것을 강조한다. 중국 정부는 국영 메스컴과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관련 수출관리규정을 공개하는데 가장 우선점을 두었다. 또한 정부 지원 강의, 워크숍 및 세미나를 통해 무역회사들이 신규 규정 개선 사항과 요건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준수사항을 각인시켜주고 있다. 수출 무역과 관련된 기업들은 정부 규정을 따르는 것뿐 아니라 의심스러운 무기 확산 활동을 신고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정부조사를 보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경 통제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가 관세법 (Customs Law) 에 따라 중국의 관세청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GAC])에 명확히 규정된 권한을 위임했으며, 기타 관련 국가 기관들과 협력하여 민감 품목 및 기술 수출입에 대한 통제·실행 핵심 기관으로 만들었다. 또한 중국 세관 당국은 다른 국가의 해당 기관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해왔다.

베이징 보고서는 중국과 국제기관 기관들 [예, 국제원자력 기구 IAEA] 간, 그리고 2004년 5월 중국의 원자력공급그룹 (Nuclear Suppliers Group [NSG])가입을 포함한 다자간 체제와의 지속적인 협력관계에 대해 강조하였다. 중국은 또한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MTCR]), 마세나르 협정 (Wassenaar Arrangement [WA]) 및 호주 그룹 (Australia Group [AG]) 과 협의를 계속해왔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보고서는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의 중요성과 도입·이행되어야 할 필수적 대책에 대해 강조하는 한편, 비확산 노력과 관련 기술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국제 협력 간에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일본

2004년 10월 28일 제출된 일본의 보고서는 “주요 다자간 협약에 의한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국내 규정을 제정했다고 언급하였다. 핵시설의 효과적인 방호와 핵·화학·생물무기 확산과 운송 수단 저지를 위한 포괄적인 규정은 이미 실행되고 있다고 기술했다. 일본의 외환무역법 (Foreign Exchange and Foreign Trade Law) 과 행정명령 378호 (1949) 과 260호 (1980) 에 의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물품 및 기술의 수출은 허가를 요한다. 2002년 4월, 일본은 “최종 용도와 최종 수요자가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될 경우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실상 모든 품목과 기술의 수출에 대해 경제무역산업성 (Minister for Economy, Trade and Industry [METI]) 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캐치올 통제제도 (catch all)”를 도입했다.

보고서는 일본이 모든 국제공급체제와 탄도미사일 확산 관련 국제미사일 행동규약 (Hague Code of Conduct against Ballistic Missile Proliferation) 에 동참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일본이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해 다자간협력 증진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임을 명시하였다. 보고서는 또한 국제원자력 기구[기구의 총 예산 중 18%], 화학무기금지기구 (Organiz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OPCW]), 생물무기금지협약 회의, 전면핵실험금지조약기구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Organization [CTBTO]) 준비위원회 [각 예산의 20%] 및 핵확산금지조약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재검토 회담[총 예산의 14%] 에 대해 상당한 재정적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본은 또한 G8 “대량살상무기와 재료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전 세계적 협력 (Global Partnership Against the Spread of Weapons and Materials of Mass Destruction)” 에 따라 러시아의 핵잠수함을 무장해제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에 동의하였다.

도쿄 보고서는 또한 “일본은 조약내용 이행에 필요한 법·규정 인프라, 이행 경험 그리고/혹은 자원이 부족한 국가의 특정 요구 사항에 대해 기꺼이 지원할 것이다”라고 언급하며,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 관리 및 비확산 증진과 관련된 일본의 활동에 대해 논의하였다. 일본은 2003년 11월과 2005년 2월에 [12 페이지 관련 내용 참조]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관련 아시아 고위 관리자 회담 (Asian Senior-level Talks on Non-Proliferation [ASTOP]) 을 주최하였으며, 제2

회 아시아수출통제정책회담 (Asian Export Control Policy Dialogue) 과 2004년 10월에 열린 제12회 아시아수출관리세미나에 이어 2003년 10월에 열린 제1회 아시아수출통제회담 (Asian Export Control Dialogue) 을 통해 수출통제 강화를 지지하였다.

일본은 2004년 10월 해상 항해저지 훈련을 주최하며, 미국이 주도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 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일본은 또한 “아시아 국가들 간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대한 지지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한국

2004년 10월 27일 제출된 한국의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모든 비확산 체제 및 다자간 수출관리협약에 동참하고 있으며, 결의내용이행 조항을 수행하고 준수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법적·행정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특정금융거래보고법 (Financial Transactions Reports Act) 과 자금세탁방지법 (Proceeds of Crime Act) 를 포함한 국가 법령을 통해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를 확보하기 위한 비국가 행위자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다. 원자력법 (Atomic Energy Act) 과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Act for Physical Protection and Radiological Emergency) 은 핵무기 취득, 제조, 운송 및 운반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화학무기의 금지를 위한특정화학물질의 제조수출입 규제등에 관한법률 (Act on the Control of the Production, Export and Import of Specific Chemical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은 화학무기의 개발, 생산, 취득 및 운송을 금지하고 있으며,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Act on Special Measures for the Defense Industry) 은 미사일관련 활동 일체에 대해 정부의 승인을 얻도록 제한하고 있다.

한국은 쟁거위원회 (Zangger Committee), 핵 공급국그룹, 바세나르체제, 호주 그룹,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와 G8 대량 살상무기와 재료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전 세계적 협력 회원국이다. 한국은 2003년 1월 자체 수출통제시스템에 “캐치올” 통제체계를 도입하였으며, 2004년 2월 산업자원부 내에 전략물자관리과를 설치하였다. 한국은 또한 2004년 8월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 (Strategic Trade Information Center) 를 설립하여 민간 부분 사업자들이 수출통제규정을 준수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관세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 관세청은 위험물자의 수출입 제한 및 검사를 담당하고 있다.

한국 국회는 2004년 4월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의 부속의정서 내용을 비준하였으며, 2004년 10월에는 정부에서 국가원자력관리통제센터 (National Nuclear Management and Control Agency) 를 설립하였다. 2004년 9월, 한국 정부는 “평화적 핵 이용 4원칙 (Four Principles for the Peaceful Use of Nuclear Energy)” 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핵무기 개발 혹은 취득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하며, 핵 투명성 원칙을 고수하고, 국제 핵 비확산 협약을 준수하며, 국제사회의 신임을 확보하면서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확대해 나갈 것을 맹세했다.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2004년 10월 28일 제출된 국가 보고서에서 인도네시아는 스스로를 테러리즘의 희생자로 지칭하며, 1540 결의 내용을 준수하고, 이행에 충실할 것을 선언했다. [편집자 주: 2003년 외국 관광객을 포함하여 2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발리 섬의 2개 나이트클럽 폭탄테러 사건과 2004년 9월 자카르타에 위치한 호주 대사관 외부에 폭탄이 터진 사건을 포함하여 인도네시아는 지난 3년간 수많은 테러 발생지가 되어 왔다. 알 카에다 (al-Qa`ida) 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도네시아 지역 테러리스트 망인 제마 이슬라미야 (Jemaah Islamiyah) 은 이러한 주요 테러사건 모두에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신들이 대량 살상무기를 생산·개발 혹은 이용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생산·개발 혹은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테러리즘에 대항하고 수출관리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에서 취한 특별 조치에 대해 기술하였다.

테러리즘에 대한 대처 부분에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정무안보 조정부 (Office of the Coordinating Minister of Political and Security Affairs) 의 반 테러리즘 조정국 (Counter-Terrorism Coordinating Desk) 설립과 “생물테러 공격”과 같은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보건부 (Department of Health) 에 의해 설립된 기동팀을 예로 들었다. 또한 보고서는 국가보건 당국과 전염성질병 발발 정보를 공유하도록 인도네시아에서 개발한 조기경보발발보고시스템 (Early Warning Outbreak Reporting System [EWORS])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보고서는 “수출관리에 관한 법률 10/1995”와 “테러 범죄행위 근절에 관한 법률 15/2003”을 주요한 입법 조치로 지적하면서, 국가의 수출관리시스템 및 항구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해당 보고서는 인도네시아의 수출관리 프로세스를 다음과 같은 3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1. 공급자 분석, 원산지 및 운송 수단 분석을 통한 통제대상 품목 선정을 포함하는 “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의한 “예비 통제”
2. 선택적, 혹은 무작위 검사나 세관 문서를 이용해 수집된 정보에 기반한 검사가 이루어지는 “업무 진행 중 통제”
3. 위에 기술된 두 통제 과정에서 적발되지 않았으나 규정을 위반할 수 있는 수출입 물품의 통제를 포함하는 “후기 통제”. 이 최종 단계는 수출입업자에 대한 사후 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항구 및 공항 안전에 대해서는 엑스레이 스캐너와 같은 감지 및 모니터링 장비가 주요 공항에 설치되어 있으며, 방사선 탐지 및 모니터링 장비가 주요 항구에도 설치되었다고 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또한 해양순찰을 실시하기 위해 싱가포르와 합동으로 특별수사팀을 만들었다.

말레이시아

칸 (A.Q. Khan) 박사의 핵 밀수 네트워크 사건에 말레이시아에 근거를 둔 조직이 관련되어 있음이 최근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가 1540 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수출 통제시스템의 취약점에 대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 2004년 10월 26일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유엔안보리 결의안 1540을] 이행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의 도움 요청에 대해 긍정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기술하였다. 하지만 포괄적인 대량살상무기 수출통제 시스템의 부재와 최근 “수출관리법 및 규정이 경제적 사유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결의 사항 중 효과적인 비확산 통제체계 구축(3항)에 대한 조치로, 비확산 조약의 시행 원리를 내포하는 다양한 법률 - 예를 들면, 유해물질 및 “극심한 상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무기 혹은 수단”의 사용을 범죄로 규정하는 형법 - 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또한 1960년 무기법 (Arms Act) 과 1967년 관세법 (Customs Act) 이 대량살상무기 운송, 개발 및 취득에 대항하기 위한 주요 법률로 명기되어 있다. 하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대량살상무기 사용과 관련된 테러 행위를 범죄화하는 조항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수출관리법이 화학무기금지조약 (Chemical Weapons Convention [CWC]) 하의 의무 사항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2004년 화학무기금지조약 법안이 의회에 인증되어, 효력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편집자 주: 해당 법안은 2005년 봄 의회 개정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법에 의하면 불법적으로 화학무기 생산을 보조하거나 사용 혹은 취득하는 개인에 대해 최고 미화 264,000 달러의 벌금과 최고 30년 형을 구형할 수 있게 된다.] 보고서의 같은 섹션에 말레이시아의 주요 항구 및 공항에 “스캔 기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명기되어 있으며, 미국 컨테이너 안보구상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CSI])에 말레이시아가 조인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편집자 주: 켈랑 (Kelang) 과 탄정 펠라파스 (Tanjung Pelapas) 항은 2004년부터 “CSI 항”으로 지정되었다.]

필리핀

2004년 10월 28일에 제출된 필리핀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반 테러리즘 법안 및 발의 - 특히 2001년 10월 글로리아 아로요 대통령 (President Gloria Macapagal-Arroyo) 이 골자를 마련한 국가계획 (National Plan) 에 줄기를 둔 “16 항 반 테러리즘 프로그램 (16-Point Counter-Terrorism Program)” 에 초점을 두고 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 저지를 위한 필리핀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공화국 법 (Republic Act) 5207 [원자력], 대통령령 930 [수출 절차], 공화국 법 2067 [방사선 물질] 및 행정명령 522 [화학물질] 등이 수출통제시스템을 성립시키는 법률이라고 기술하였다.

핵문제에 관해서는 필리핀 핵 연구소 (Philippine Nuclear Research Institute [PNRI])에서 방사선 물질 안전을 위한 행동 계획을 개발하고 국가 방사선 비상대책 및 대응계획 (National Radiological Emergency Preparedness and Response Plan) 을 개정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뿐 아니라, 비록 구체적인 실행 일자리는 명기되어 있지 않지만, 필리핀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의 부속의정서를 비준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고서를 통해 주장하였다. [편집자 주:

1997년 필리핀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의 부속의정서에 서명하였으나, 필리핀 의회가 합의 내용을 비준하지 않았다.]

비록 MTCR 혹은 호주 그룹과 같은 국제 공급체제에 합류할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더 민감한 수출관리시스템을 개발할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마닐라의 “관계부처 합동 기관인 대량살상무기 조사 및 통제기관 (National Authority for WMD Inspection and Control [NAWIC])”이 “2006년 초” 시행 예정인 법률과 더불어 포괄적인 “필리핀 대량살상무기 통제체제 (Philippine WMD Export Control Regime)”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정부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기술하였다. 최근 외교부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관세청 (Bureau of Customs) 및 필리핀 경찰 (Philippine National Police) 등이 위 사항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싱가포르

2004년 10월 21일 제출된 싱가포르 보고서는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에 대한 싱가포르의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수출관리 및 국제 의무사항에 부합하는 관련 규정에 대해 상술하였다. 또한 이러한 노력의 핵심인 2003년 전략물자 (통제) 법 (2003 Strategic Goods Control Act) 과 더불어,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대항하기 위해 싱가포르가 시행하는 5가지 주요 규정조치에 대해 언급하였다. 법안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물품 및 무형기술이전, 수출입, 재수출 및 환적에 적용되며 “캐치올” 조항을 포함한다. 보고서에 의하면 싱가포르 세관에서 해당 법안의 이행 및 집행을 담당하게 되며, 정기적인 대 국민 및 기업 대외활동을 책임지게 된다.

보고서에는 또한 4개의 기타 법안인 수출입법 (Regulation of Imports and Exports Act), 화학무기 [금지] 법 (Chemical Weapons [Prohibition] Act), 무기법 (Arms Offences Act) 및 무기폭발물법 (Arms and Explosives Act) 의 조항이 상술되어 있다.

싱가פור는 다자간 수출통제체제 회원국은 아니지만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에서 추출한 통제리스트를 관리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또한 컨테이너안보구상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CSI]) 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 에 동참하고 있다. 컨테이너 안보구상 참여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 선사, 미국 관세청 (U.S. Customs Service), 물류회사 및 해운회사들과의 의견교환을 지속하면서, 두 개의 항구에 방사선 스캐너와 같은 신규 장비를 설치하였다고 기술하였다. [19페이지 “지역 개요” 부분의 관련 내용 참조]

태국

2004년 11월 5일에 제출된 태국 보고서는 1540 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태국의 노력에 대해 기술하고, 수출통제시스템과 항만안전계획 뿐 아니라 최근 비확산 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제시한다. 태국의 국제비확산협약 내용으로 시작되는 보고서에서 태국 정부는 2005년 말까지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CTBT]) 에 합류할 의사가 있다고 발표했으며, 국제원자력기구의 부가의정서에 “가까운 시기에 국내 절차가 완료 되는대로” 서명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했다.

태국 정부는 또한 다양한 정부조직의 수출통제 책임에 대해 명확히 표명하였다. 예를 들면, 국방부 (Ministry of Defense) 는 미사일, 비핵무기 및 관련 물질에 대한 규정 및 통제를 책임지는 기관이며, 상무부 (Ministry of Commerce) 는 군·민간 겸용 품목에 대해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기술되었다.

해양안전과 관련해서는 2004년 3월부터 방콕 남쪽에 위치한 램 차방 (Laem Chabang) 항구에 위험성이 높은 화물 탐지 및 검사를 위한 엑스레이 컨테이너 장비가 사용되어왔다고 말하며, 미국의 컨테이너 안보구상에 태국이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었다. 보고서는 또한 태국 정부기관이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및 컨테이너 안보구상에 대한 민간 부분의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회의 및 세미나에 관여하고 있다고 기술하였다.

1540결의안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계획된 기타 조치에 대한 세부사항으로, 앞으로 시행하게 될 9가지 주요 계획에 초점을 맞추었다. 다음은 그 중 일부 내용이다:

- 소비자 인증 시스템 구축
- “포괄적인 최신 통제리스트를 구축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현 대량살상무기 및 군·민 겸용 통제 리스트의 재검토
- 램 차방 항구의 컨테이너 및 차량 스캔용 방사선 감지기를 사용함으로써 미국 에너지부 (U.S. Department of Energy) 에서 지원하는 메가포트구상 (Megaport Initiative) 에 동참
- 부가의정서에 명시된 핵관련 물질 통제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군·민간 겸용 물자의 운송·거래 및 대량살상무기 저지, 탐지, 방지 및 대항에 효과적인 수단에 대한 훈련 및 워크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기술하였다.

Asian Export Control Observer (<http://cns.miis.edu/pubs/observer/asian>) is devoted to the analysis of WMD export control issues in the East Asian region. It is published bi-monthly for the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community by the Center for Nonproliferation Studies (CNS), Montere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MIIS), with financial support from the U.S. Department of Energy. Although every reasonable effort has been made to check sources and verify facts, CNS cannot guarantee that accounts reported in the open literature are complete and accurate. Therefore, CNS shall not be held liable for any loss or damage caused by errors or omissions. Statements of fact and opinion expressed in the *Asian Export Control Observer* are the responsibility of the authors alone and do not imply the endorsement of the editors, the Center for Nonproliferation Studies, the Montere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or the U.S. Government. Copyright 2005 by MIIS. May be freely reproduced and distributed with proper citation.

Editor-in-Chief

Jing-dong Yuan

Associate Editor-in-Chief

Stephanie Lieggi

Senior Consultants

Leonard Spector

Associate Editors

Andrew Diamond

Daniel Pinkston

Contributors

Randall Beisecker

Chritina Chuen

Dennis Gormley

Patrick Heiman

Dave Kim

Tanat Kozhmanov

Debika Pal

Masako Toki

Mark Wuebbels

Reviewers

Richard Cupitt

Mitsuro Kurosawa

Phillip Saunders

Carlton Thorne

Copy Editor

Randall Beisecker

Andrew Diamond

Center for Nonproliferation Studies

email: asiaexcon@miis.edu

Montere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460 Pierce Street

Monterey, CA 93940